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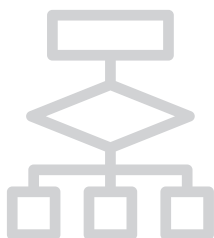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Manual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Manual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세계 각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체제와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기업 46%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지식 부족으로 우리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및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시급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발간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여 나고야의정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관련 주요 내용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수록하였고,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수록하여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출간되었습니다.

본 안내서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배연재

I.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07

나고야의정서는 왜 만들어졌을
까요?

01. 생물다양성협약	08
02. 나고야의정서	09
03. 유전자원법	12

II. ABS 실무 매뉴얼 17

유전자원 이용, 어떻게 하나요?

01. 유전자원 해당 여부	19
02. 유전자원 이용 해당 여부	20
03. 원산국 확인	21
04. 원산국의 법령·접근 절차 확인	25
05. 사전통고승인 취득	31
06. 이익공유	40
07. 절차준수의 신고	44
08. 기타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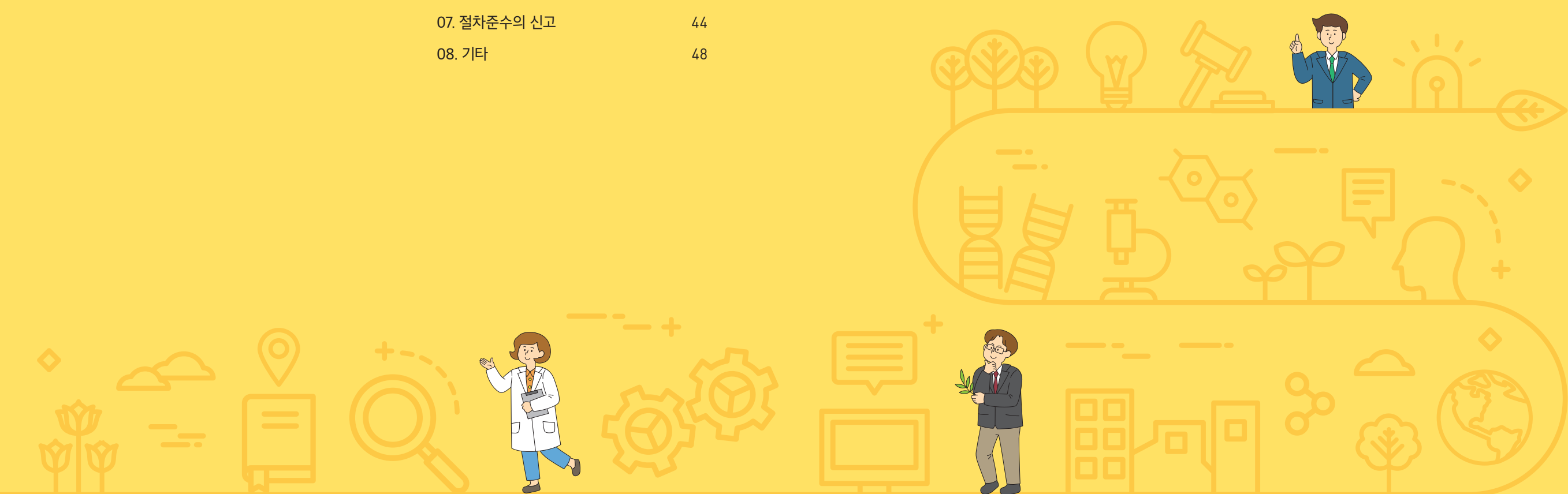
III. 자주 묻는 질문 51

Q&A로 쉽게 풀어보아요

IV. 부록 63

실무역량을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

01.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	64
02. 주요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 서식	68
03. 예시계약서	88
04. 유용한 사이트	97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나고야의정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01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협약의 탄생 배경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주인공 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1904년 우리나라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한라산 구상나무입니다. 만약 그때 반출되지 않았다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국 지위를 갖고 해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해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 생물을 몰래 빼돌리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인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원을 대부분 '인류 공동'의 자산처럼 여겼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의 변화나 전쟁, 무역, 여행을 통해서 생물이 전파되는 것처럼 국외 반출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강대국들은 자본과 앞선 생명공학 기술, 법제도를 내세워 식민지나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함부로 가져다 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원을 독점해서 이용하거나 신약, 신식품, 신소재를 개발과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원산국에는 혜택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 협약의 목적

한편에서는 생물주권을 빼앗기고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불만과 갈등이 커져갔고, 다른 쪽에서는 '돈이 될 만한' 생물들이 마구잡이로 포획, 채집되면서 지구촌 생태계의 유기적 균형이 급속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제각각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종다양성이 위협받으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해관계와 생태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국제적 규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입니다. CBD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천명했습니다.

- ◆ 생물다양성 보전
-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02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1.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 공식명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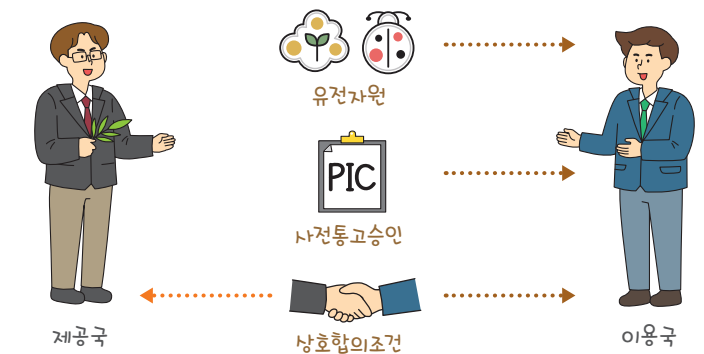


▶ 채택 및 발효

2010. 10. 29. 채택
2014. 10. 12. 발효

▶ 우리나라 서명 및 발효

2011. 9. 20. 서명
2017. 8. 17.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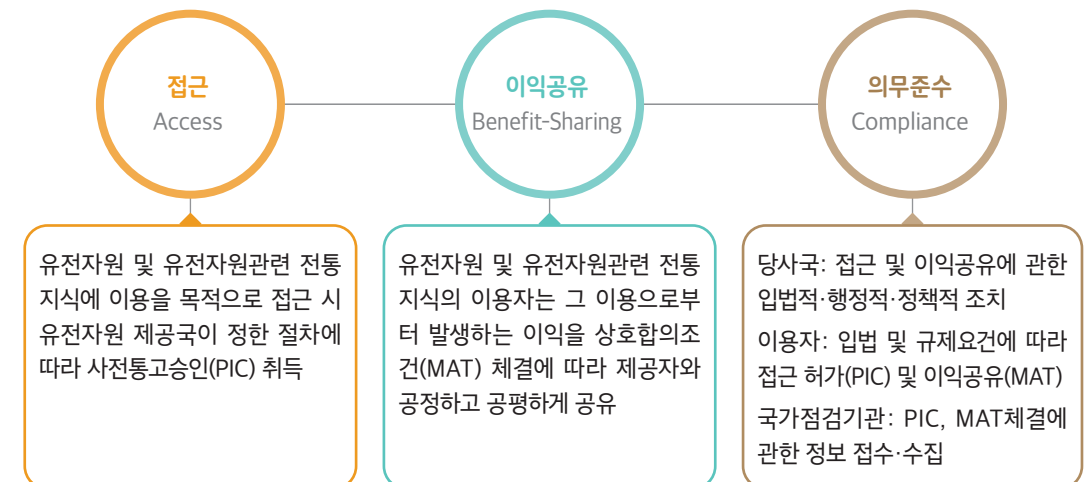


2.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요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를 ABS라고 부릅니다.

ABS는 접근(Access),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준수(Compliance)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ABS의 구성요소



▶ 채택 및 발효

1992. 5. 23. 채택
1993. 12. 29. 발효

▶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1994. 10. 3. 가입
1995. 1. 1. 발효

3.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 나고야의정서 비준(123개국) 및 법령 제정현황(72개국) ('19.10.31 기준)

 법령제정 국가

지역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아시아 (27)	요르단	'12.01.10	베트남	'14.04.23	대한민국	'17.05.19
	라오스	'12.09.26	UAE	'14.09.12	일본	'17.05.22
	인도	'12.10.09	캄보디아	'15.01.19	쿠웨이트	'17.06.01
	시리아	'13.04.05	키르기스스탄	'15.06.15	레바논	'17.10.13
	몽골	'13.05.21	카자흐스탄	'15.06.17	아프카니스탄	'18.06.06
	타지키스탄	'13.09.04	필리핀	'15.09.29	말레이시아	'18.11.05
	인도네시아	'13.09.24	파키스탄	'15.11.23	네팔	'18.12.28
	부탄	'13.09.30	중국	'16.06.08	몰디브	'19.07.01
	미얀마	'14.01.08	카타르	'17.01.25	북한	'19.10.01
아프리카 (45)	가봉	'11.11.11	우간다	'14.06.25	토고	'16.02.10
	르완다	'12.03.20	니제르	'14.07.02	세네갈	'16.03.03
	세이셸	'12.04.20	감비아	'14.07.03	잠비아	'16.05.20
	에티오피아	'12.11.16	마다가스카르	'14.07.03	말리	'16.08.31
	모리셔스	'12.12.17	부룬디	'14.07.03	스와질란드	'16.09.21
	남아공	'13.01.10	모잠비크	'14.07.07	시에라리온	'16.11.01
	보츠와나	'13.02.21	수단	'14.07.07	카메룬	'16.11.30
	코모로	'13.05.28	말라위	'14.08.26	상투메프린시페	'17.01.10
	기니비사우	'13.09.24	기니	'14.10.07	앙골라	'17.02.06
	코트디부아르	'13.09.24	레소토	'14.11.12	짐바브웨	'17.09.01
	이집트	'13.10.28	콩고민주공화국	'15.02.04	차드	'17.10.11
	부르키나파소	'14.01.10	콩고	'15.05.14	탄자니아	'18.01.19
	베냉	'14.01.22	라이베리아	'15.08.1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07.27
	케냐	'14.04.07	모리타니	'15.08.18	에리트레아	'19.03.13
	나미비아	'14.05.15	지부티	'15.10.01	가나	'19.08.08
중남미 (15)	멕시코	'12.05.16	페루	'14.07.08	아르헨티나	'16.12.09
	파나마	'12.12.12	우루과이	'14.07.14	앤티가 바부다	'16.12.12
	온두라스	'13.08.12	도미니카	'14.11.13	에콰도르	'17.09.20
	가이아나	'14.04.22	쿠바	'15.09.17	세인트키츠네비스	'18.09.05
	과테말라	'14.06.18	볼리비아	'16.10.06	베네수엘라	'18.10.10
오세아니아 (9)	피지	'12.10.24	바누아투	'14.07.01	투발루	'18.08.28
	미크로네시아	'13.01.30	마셜제도	'14.10.10	통가	'19.10.03
	사모아	'14.05.20	팔라우	'18.06.13	솔로몬제도	'19.10.24

유럽 (27)	알바니아	'13.01.29	슬로바키아	'15.12.29	프랑스	'16.08.31
	노르웨이	'13.10.01	영국	'16.02.22	스웨덴	'16.09.08
	헝가리	'14.04.29	독일	'16.04.21	룩셈부르크	'16.10.25
	덴마크	'14.05.01	체코	'16.05.06	몰타	'16.12.01
	유럽연합	'14.05.16	핀란드	'16.06.03	포르투갈	'17.04.11
	스페인	'14.06.03	벨기에	'16.08.09	오스트리아	'18.07.20
	벨라루스	'14.06.26	불가리아	'16.08.11	세르비아	'18.10.30
	스위스	'14.07.11	네덜란드	'16.08.19	에스토니아	'18.12.19
	크로아티아	'15.09.02	몰도바	'16.08.24	루마니아	'19.05.22

* 출처: CBD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사이트 참조

* 미비준국 법령(12개국) 마련: 모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프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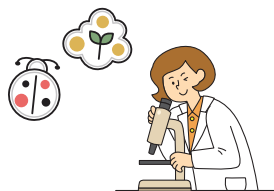
▶ 주요 국가의 ABS 법령 특성

국가 (입장)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중국 (제공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0.5~10% 국가기금, 출처공개, 중국 연구자 참여, 블랙 리스트제도 운영, 몰수 및 5~20만 위안 벌금
인도 (제공국)	생물다양성법('02)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 유를 위한 가이드라인('14)	0.1~5% 이익공유, 내·외국인 사전 허가 의무, 생물자원 접근, 연구결과 이전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제3자 이전 시 허가
남아공 (제공국)	생물다양성법('04) 생물탐사 및 ABS 규정 개정('15)	- 생물자원의 이용목적(생물탐사, 상업화, 기타 연구)에 따라 허가 절차 구분 - 내국인만 신고 가능
EU (이용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규칙('14)	이용자로서 ABS 준수 의무 규정 접근규제 필요시, 회원국은 별도의 자국법으로 규정 권고 * 스위스(특허출처공개), 프랑스·스페인·핀란드(접근규제)
일본 (이용국)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에 관한 지침('17)	국내 이용자의 ABS 의무준수 규정 접근 규제 없음(5년 이내 검토), 사후 이익공유
미국, 캐나다 (이용국)	해당없음	미국과 캐나다는 비당사국으로 ABS 규제 없음
베트남 (제공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 에 관한 칙령('17)	연매출의 1%이상, 지식재산권 이용 시 2% 이상 이익공유 접근 목적 변경 및 제3자 이전시 허가
인도네시아 (제공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에 관한 2013년 제11호 법률('13)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관한 선언적 내용 규정 개별법령(Regulation no.41/2006)에서 외국인이 인도 네시아 유전자원을 자국내에서 연구 시 허가

03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1. 목적

-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제협력 증진
-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이익공유, 절차준수 등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2. 이행: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가. 설립목적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제17조제1항)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

나. 주요 업무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신고 절차



- ◆ CBD 사무국에 정보 제공
- ◆ 사전통고승인 취득과 상호합의 조건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 ◆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 부여
- ◆ 사전통고승인 취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정보 취합 및 접수

유전자원 유형	야생생물자원	농업생명자원	병원체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	생명연구자원
---------	--------	--------	-------	----------	--------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국가점검기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	-----	---------	-------	-------	-------------------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 할 경우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절차 준수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내국민은 필요할 경우)
 |신고처| 국가책임기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서 접수 → 신고 수락 → 신고증명서

|대상|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한 내국인
 |신고처| 국가점검기관(사전통고승인 취득 90일 이내)
 국가점검기관에 신고서 접수 → 서류 확인 → 처리 완료

돌발 OX 퀴즈

-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 해설 해당 원산국이 유전자원 관련 접근 절차를 마친한 국가일 경우에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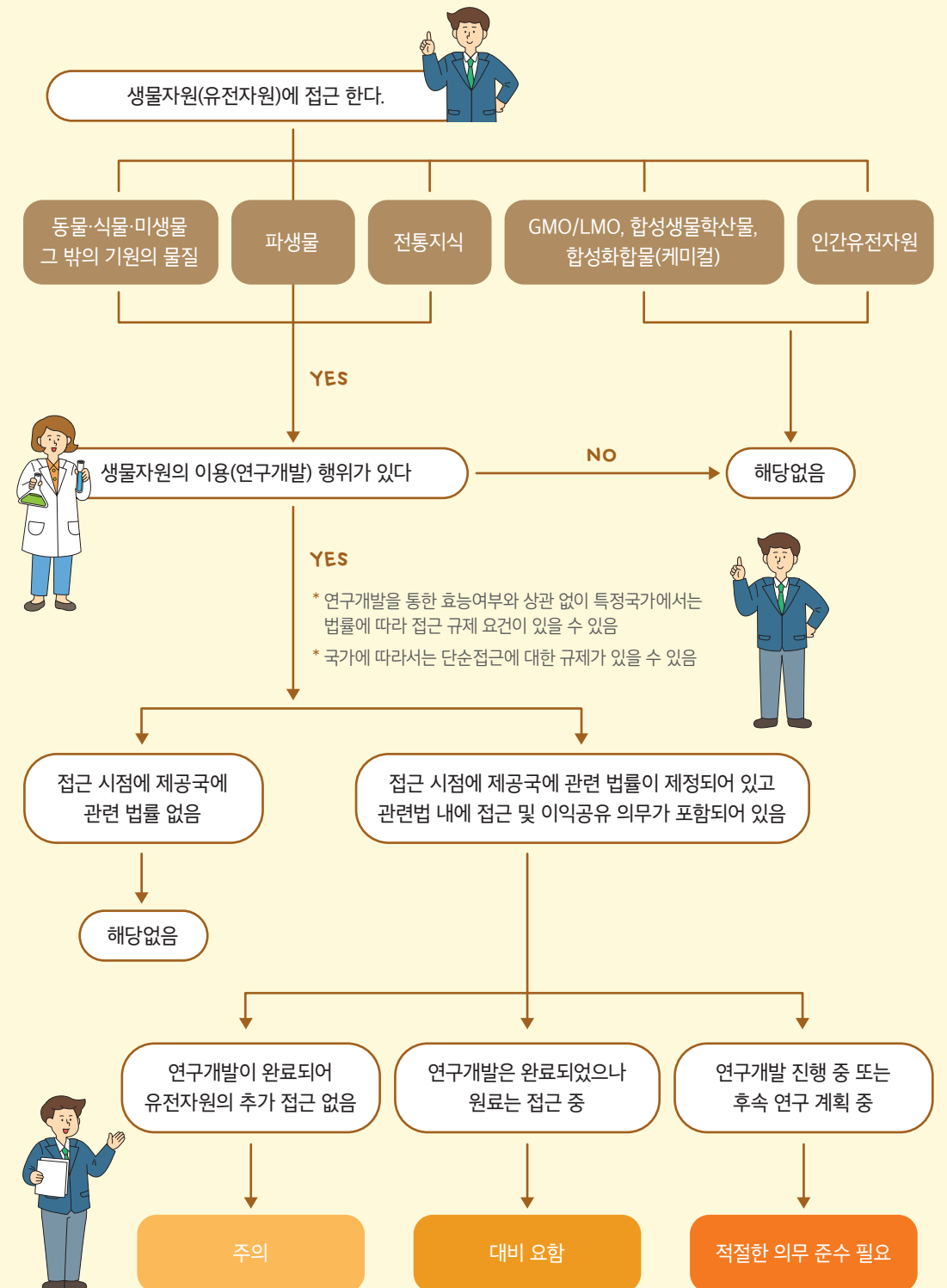


답: X

▶ 이용자 입장에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도



▶ 유전자원 이용 시 의사결정 가이드





ABS 실무 매뉴얼

유전자원 이용, 어떻게 하나요?



ABS 실무 매뉴얼

유전자원



- ◆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인가요? [P.19](#)

유전자원 이용 여부



- ◆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이란? [P.20](#)
-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20](#)

원산국 확인



- ◆ 원산국이 여러 국가인데 어느 국가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P.21](#)
- ◆ 이용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해 어느 국가에 원산국 지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22](#)
- ◆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P.24](#)

원산국 법·절차 확인



- ◆ 제공국에 제정된 관련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P.25](#)
- ◆ 해외 담당 국가기관에 직접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나요? [P.27](#)
-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P.28](#)
- ◆ 다른 기관에서 맺은 PIC/MAT을 볼 수 있나요? [P.29](#)
- ◆ 원어나 영문으로 되어있는 법령의 한글번역 문서는 어디에서 보나요? [P.30](#)

사전통고승인 취득



- ◆ 해외 생물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P.31](#)
- ◆ 국내 생물자원을 외국인에게 제공할 때 조치 사항은? [P.31](#)
- ◆ 유전자원법 법령과 관련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P.38](#)

이익공유



- ◆ 계약 체결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P.40](#)
- ◆ 제공자에게 줄 이익공유의 방식이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P.42](#)
- ◆ 제공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나요? [P.43](#)

절차준수의 신고



- ◆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국내 신고 절차는? [P.44](#)

기타



-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이행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P.48](#)
- ◆ 나고야의정서 최신 해외 동향은 어떻게 하나요? [P.48](#)
- ◆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련 교육이 있나요? [P.49](#)



01

유전자원 해당 여부



1.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인가요?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파생물입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원이 아닌, 모든 유전자원은 ABS의 대상입니다(생물다양성법 제2조제4호, 유전자원법 제2조제1호).

- * 제외대상: 인간유전자원, 공해·심해·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합성화합물, GMO/LMO, 합성생물학 산물
- * 현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돌발 OX 퀴즈

- ◆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의 목록이 있다.
해설 모든 유전자원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 X

02

유전자원 이용 해당 여부



1.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이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원 이용'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나고야의정서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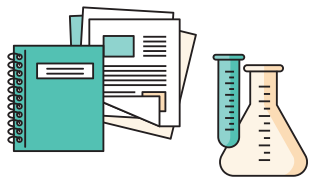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용어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용대상 활동에 대한 목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의정서 협상 시 이러한 목록이 고려되었으나 관련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종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EU ABS 규칙의 범위에 관한 지침서¹⁾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아래표에 작성하였습니다.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는 활동

-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화학 합성물을 분리하는 연구(활성 여부와 상관없음)
- ◆ 식물 신제품 개량
- ◆ 유전자 변형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발굴
- ◆ 실험동물의 개발
- ◆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효모의 개량 또는 발굴 등
- ◆ 효능과 특성연구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 활동

- ◆ 이미 특성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첨가 및 가공
- ◆ 테스트/지표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실험동물 등)
- ◆ 맥주양조에서의 효모 사용
- ◆ 생물자원센터에서의 유지관리 활동, 형태학적 분석 등 표현형 연구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
- ◆ 합성화합물(케미컬)을 이용한 연구개발, 상품화(합성의약품 등)
- ◆ 합성생물학 연구
- ◆ 단순진단을 위해 접근하는 유전자원

03

원산국 확인



1. 원산국이 여러 국가인데 어느 국가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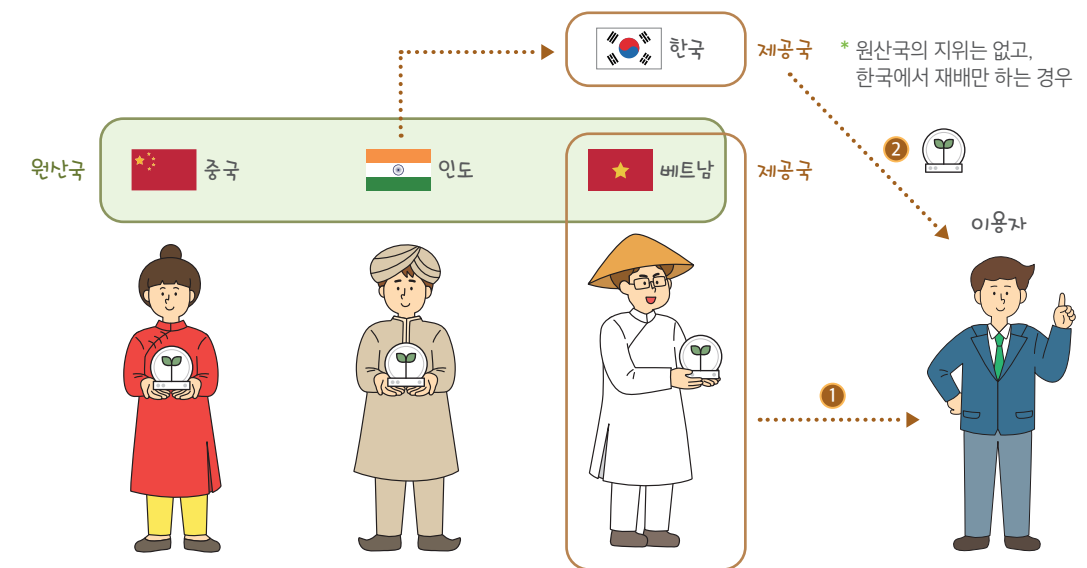
나고야의정서 제6조는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PIC)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국: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자연식재,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따라서 원산국이면서 실질적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식물종이 중국, 인도, 베트남의 야생에 분포할 때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산국이면서 제공국인 베트남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도의 개체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재배된 개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원산국인 인도의 법령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원산국	제공국	사전통고승인 취득
① 원산국 = 제공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② 원산국 ≠ 제공국	인도	한국	인도

* 베트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No.59/2017/ND-CP)
인도: 생물다양성법(2002),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2014)

1) 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of Regulation(EU) No 511/2014

2.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중개업체에게 원산국 출처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전세계 생물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catalogue of life 사이트(<http://www.catalogueoflife.org>)에서 종의 분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1 catalogue of life 사이트(<http://www.catalogueoflife.org>)

3 학명으로 검색: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3.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https://species.nibr.go.kr>)에 접속하여 국내 5만여 종의 자생 생물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물종목록을 다운로드하면 분류군별로 생물종 확인이 가능하며 생물표 본 분양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한반도에 살고있는 생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생물

테마로 보는 생물

전문정보서비스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생물종 이름이나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검색

국가생물종목록

50,827종

법에 근거하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목록을 총망라한 국가생물종목록을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다운로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우리나라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적색목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세히보기

생물표본·소재 검색 및

대여·분양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표본·소재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대여·분양을 신청하세요.

검색

대여

분양

생물지리정보서비스

생물표본 채집 위치를 지도로 표시됨이 완료된 우리나라 자생생물 표본의 분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모바일 버전

A1	B	C	D	E	F	G	H	I	J	K	L	M
No.	분류군	학명	대표속명	영양단계	영양단계	영양단계	Name	Phylum	Class	Order	Class	Order
1	포유류	Emmottia amurensis	고슴도치	Schrenk	18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Emmottomorpha	고슴도치목	Emmott
2	포유류	Crocidura lasura	무수리양쥐	Dobson	189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3	포유류	Crocidura shantungensis	무수리양쥐	Müller	190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4	포유류	Neomys fodiens	갯집서	Pennant	177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5	포유류	Sorex caucasicus	뒤쥐	Lessmann	178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6	포유류	Sorex dauricus	뒤쥐(산뒤쥐)	Thomas	1907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7	포유류	Sorex gracillimus	소뒤쥐	Thomas	1907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8	포유류	Sorex isodon	큰발뒤쥐	Turner	1924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9	포유류	Sorex misabilis	큰발서	Ognev	1937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10	포유류	Sorex minutissimus	크리뒤쥐	Zimmermann	178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Soricomorpha	참새목	Soricid
11	포유류	Rhinophagus leucogaster	검박쥐	Schneider	177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Moloss
12	포유류	Tadarida insignis	큰박쥐	(Blüth)	1862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Moloss
13	포유류	Episcopus nilssonii	삼박쥐	(Keyserling et Blasius)	1839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14	포유류	Episcopus serotinus	삼박쥐	(Schneider)	177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15	포유류	Myotis albanicus	검박쥐	(Bobrovsky)	1926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16	포유류	Nyctalus aviator	큰박쥐	Thomas	191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17	포유류	Miniopterus naigams	고슴도치	(Hodgson)	1835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Moloss
18	포유류	Murina hagedorfi	물박쥐	(Peters)	188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19	포유류	Murina ussuriensis	작은물박쥐	Ognev	191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0	포유류	Myotis blythii	검박쥐(수영박쥐)	Thomas	1906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1	포유류	Myotis blythii	검박쥐(수영박쥐)	Ognev	1912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2	포유류	Myotis blythii	검박쥐(수영박쥐)	(Fleming)	183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3	포유류	Myotis blythii	검박쥐(수영박쥐)	Hodgson	1835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4	포유류	Pipistrellus abramus	검박쥐	(Fleming)	183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5	포유류	Vesperugo murina	검박쥐(가시박쥐)	(Peters)	188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6	포유류	Vesperugo omeiensis	검박쥐(가시박쥐)	(Peters)	188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Vesper
27	포유류	Lynx lynx	스라소니	(Linnaeus)	17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Felidae
28	포유류	Prionailurus bengalensis	스라소니	(Gray)	182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Felidae
29	포유류	Cuon alpinus	승냥이	(Pallas)	181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Canidae
30	포유류	Nyctereutes procyonoides	늑대	(Gray)	1824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Canidae
31	포유류	Uncia uncia	스라소니	(Linnaeus)	17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Uncia
32	포유류	Canis lupus	늑대	(Linnaeus)	17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Canidae
33	포유류	Eurostocheus jubatus	늑대(사자)	(Schneider)	177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Canidae
34	포유류	Zalophus japonicus	검박쥐	(Peters)	188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hiroptera	박쥐목	Chiropt
35	포유류	Histiotus fasciatus	검박쥐(가시박쥐)	(Zimmermann)	1783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Phocidae
36	포유류	Phoca largha	물범	Pallas	1811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Phocidae
37	포유류	Pusa hispida	북극물범	(Schneider)	177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Phocidae
38	포유류	Lutra lutra	수달	(Linnaeus)	17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Mustelidae
39	포유류	Martes flavigula	여우	(Boddard)	1789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Mustelidae
40	포유류	Martes melampus	여우	(Gray)	1840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Mustelidae
41	포유류	Martes melampus	여우	(Linnaeus)	1758	Chordata	척삭동물문	Mammalia	포유류강	Carnivora	식육목	Mustelidae

04

원산국의 법령·접근 절차 확인

1. 원산국의 ABS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CBD ABSCH 홈페이지는 각국의 법령제정 현황,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국가연락기관: 유전자원 관련 법령 및 접근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
- * 국가책임기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는 기관



원산국의 관련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CBD ABSCH 사이트(<http://absch.cbd.int/>)

2 클릭하여 국가 검색

ABSC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out the ABSCH

Search

Submit

Country Profiles

National Reports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is a platform for exchanging information on ABSCH and a key tool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119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3 Ratified, not yet Party

79 Non-Parties

National Records

174 ABS National Focal Point

110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244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

8 ABS Procedure

1 National Model Contractual Clause

1109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47 National Websites or Databases

52 Checkpoint

2 Search를 클릭할 경우

ABSC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out the ABSCH

Search

Submit

Country Profiles

Search the ABSCH

Viet Nam 검색

SEARCH FILTERS:

Record types

Keywords

Country

Regions

National records 1937

Reference records 296

SCBD records 67

Prev

1

2

3

4

5

Afghanistan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ENTRY INTO FORCE: 04 SEP 2018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Mr. Shah Zaman Maiwandi

Director General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EPA) Central Post Office Box

ABS NATIONAL FOCAL POINT | AFGHANISTAN | 24 SEP 2018

2 Country Profiles를 클릭할 경우

ABSC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out the ABSCH

Search

Submit

Country Profiles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is a platform for exchanging information on ABSCH and a key tool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119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3 Ratified

Country Profiles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val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Uzbekistan

Vanuatu

Viet Nam

Zambia

Zimbabwe

③ 해당국의 법령 클릭하여 확인

ABSC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ome | About the ABSCH | Search | Submit | Country Profiles | National Reports

CBD > ABSCH > Country Profiles > Viet Nam

각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Viet Nam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국가연락기관 1 ABS National Focal Point

2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3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

국가책임기관 4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5 National Websites or Databases

법령, 규제 6

클릭하여 확인

숫자 의미: 업로드된 개체 수

Viet Nam

Party Status: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 2014

Accession on: 23 Apr 2014

Signatory: No

CBD Country Profile: www.cbd.int/countries/?country=vn

④ 베트남의 유전자원 관련 법령 확인

Viet Nam

Party Status: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 2014

Accession on: 23 Apr 2014

Signatory: No

CBD Country Profile: www.cbd.int/countries/?country=vn

+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1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2

-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 (MSR) 3

Select the ABS Measures to be displayed in the overview

☒ 1. Vietnam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 vision to 2030
NATIONAL / FEDERAL | POLICY/STRATEGY/ACTION PLAN | NOT LEGALLY BINDING | ADOPTION: 31 JUL 2013

☒ 2. Biodiversity Law (2008)
NATIONAL / FEDERAL | LAW | LEGALLY BINDING | ENTRY INTO FORCE: 01 JUL 2009

☒ 3.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NATIONAL / FEDERAL | LAW | LEGALLY BINDING | ACCESS, BENEFIT-SHARING, COMPLIANCE | ENTRY INTO FORCE: 01 JUL 2017

☒ 4. Guidance Docu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Decree 59/2017/ND-CP on access to GRs and benefit sharing from utilization of GRs
NATIONAL / FEDERAL | EXPLANATORY INFORMATION | NOT LEGALLY BINDING | ADOPTION: 16 MAY 2019

클릭하여 법령 원문 확인

2. 유전자원 원산국(해외)에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국의 국가연락기관에 이행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ABSC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가 프로필을 클릭하면 'ABS National Focal Point'에서 국가연락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되어 있는 영문 이메일로 유전자원 접근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을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ABSC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ome | About the ABSCH | Search | Submit | Country Profiles | National Reports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is a platform for exchanging information on ABSCH and a key tool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dia

Party to the Nagoya Protocol

1 ABS National Focal Point

20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

1 ABS Procedure

0 National Model Contractual Clause

741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0 National Websites or Databases

119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3 Ratified, not yet Party

79 Non-Parties

Announcements

TIPS FOR GOVERNMENTS
Tips to effectively communicate your national information on the ABS Clearing-House
24 MAY 2019

9TH APRIL TO 12TH APRIL, 2019 (8:30 AM IST/AM/EST/AM PANAMA)
UNDP GEF Global ABS Project. Webinar on the Community of Practice Workshop
05 APR 2019

27 COUNTRIES INVESTING IN BIODIVERSITY FOR PEOPLE AND PLANET
ABS is Genetic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05 APR 2019

ABS NATIONAL FOCAL POINT

Country: India

Name: Ms. Sujata Arora

Function: Adviser/Scientist 'G'

Organiz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Email: sujata@nic.in

Treat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Link to the information on the CBD website: <http://www.cbd.int/kb/record/focalPoint/3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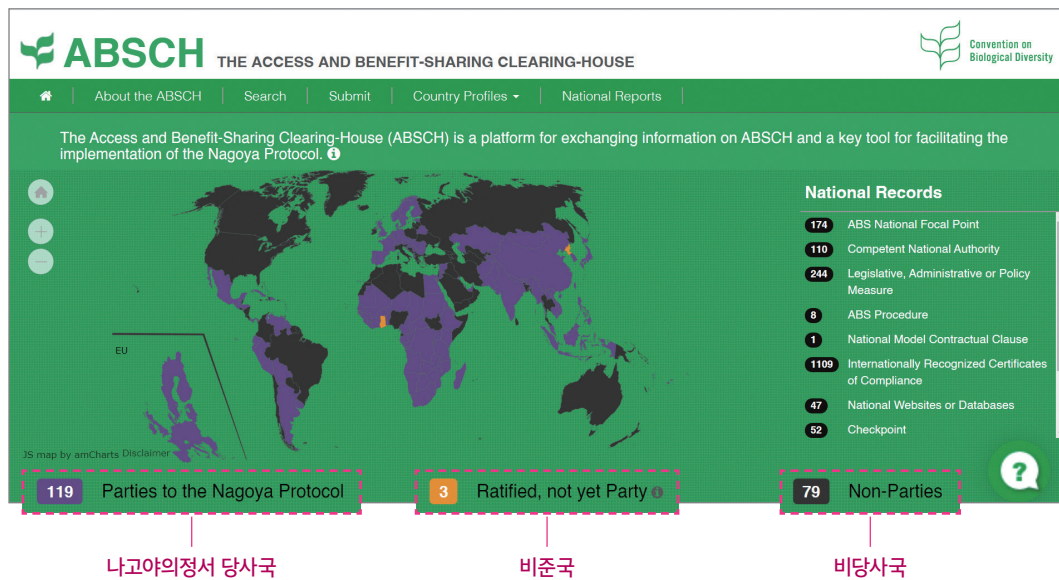
ABSCH-NFP-IN-200717-9

3.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CBD ABSCH(<http://absch.cbd.in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CH 홈페이지의 '비준국'과 '당사국'의 의미

- 비준국: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비준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가입(Accession)은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 당사국: 비준서를 기탁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말합니다.



4. 다른기관에서 맺은 PIC/MAT을 볼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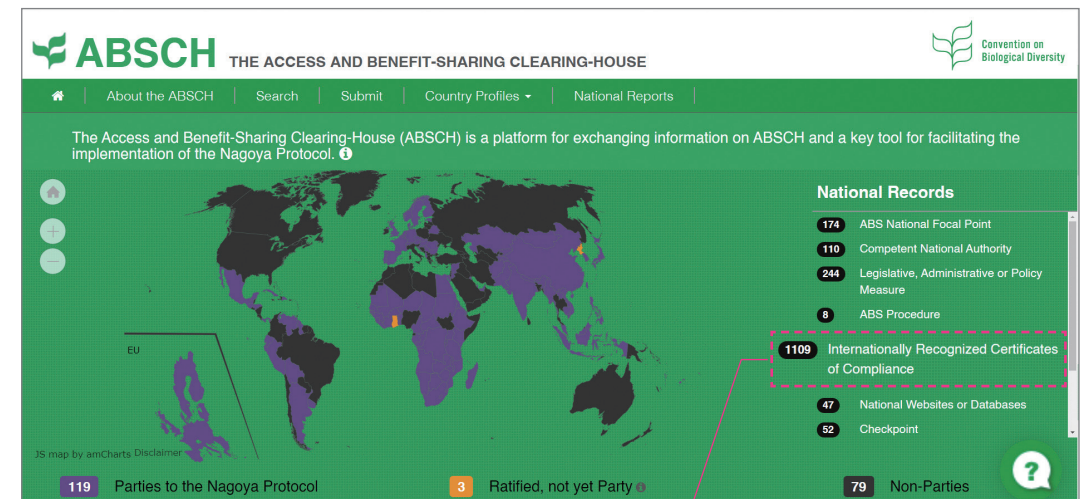
CBD ABSCH(<http://absch.cbd.int>)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체결 정보를 DB화하여 ABSCH 웹사이트에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제공국의 담당자(PA: Publishing Authority)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PIC)와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정보를 ABSCH에 입력하고 공개를 결정하면, 인증서(IRCC)의 형태로 ABSCH에 공개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인증서(IRCC)의 필수 정보는 국가책임기관, 사전통고승인(PIC) 허가번호, 허가일이며, 제공자, 사전통고승인(PIC) 획득자, 유전자원 종료, 상업적/비상업적 목적 등의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설정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RCC(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나고야의정서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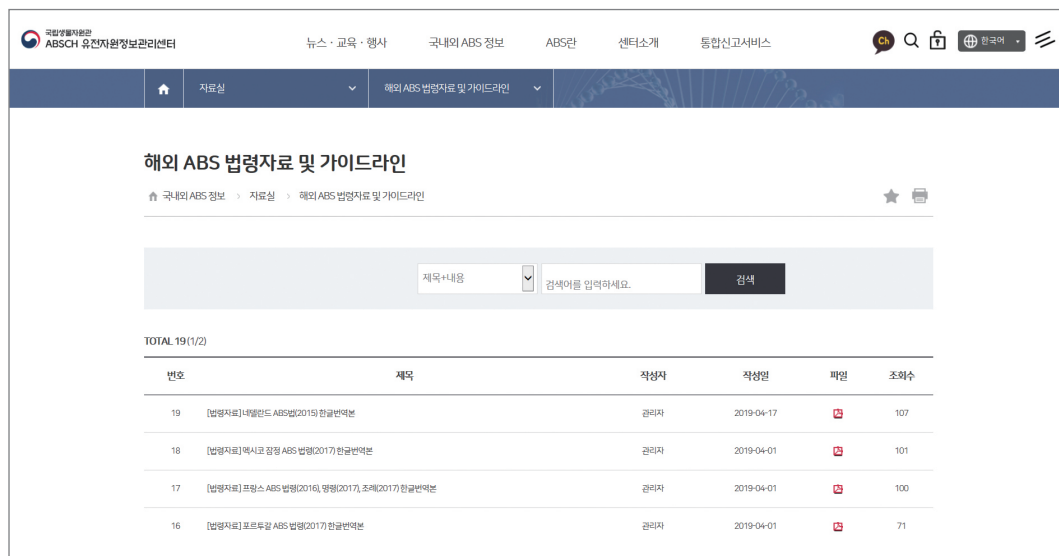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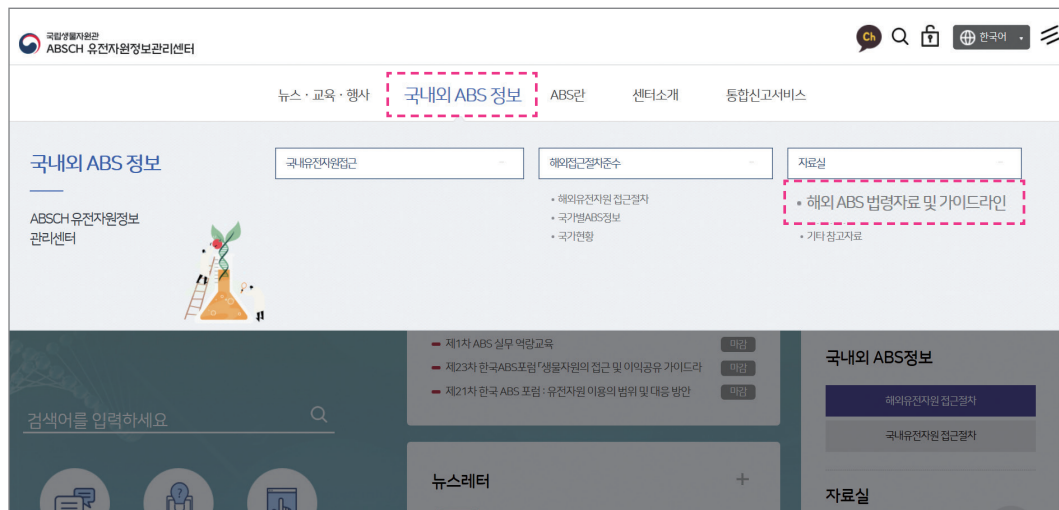


IRCC: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5. 유전자원 원산국의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ABS 정보 → 자료실 하위메뉴에 [해외 ABS 법령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목으로 ABS 관련법 및 국제조약의 한글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외유전자원 이용

05

사전통고승인 취득



1.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접근 계획 중인 생물자원 제공국에 첫째, 원산국 지위가 있고 둘째, ABS 관련 법률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²⁾ 제공국이 원산국이며 ABS 절차준수가 필요하다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이전에 제공국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전통고승인(PIC) 양식은 국가별로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으며 이는 각 국가 ABS 법령에 별첨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전통고승인(PIC)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식은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내유전자원 이용

2. 국내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는 접근 신고의 대상을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와 준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PIC) 신고의 의무가 없지만 유전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도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https://www.ab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원산국 지위는 본서 21페이지, ABS 관련 법률 및 절차 마련 여부 확인은 본서 25페이지 참고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책임기관 선택)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기관 선택

신고인

작성 항목
(자유롭게 이동가능)

상호합의
조건

수수료 납부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책임기관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물자원, 산림생물자원, 병원재 미생물생물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아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관리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임시저장

다음

① 국가 책임기관 선택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를 위한 책임기관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된 책임기관은 업무담당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기관 선택 >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성호합의 조건 >
수주료 납부 >
신고서 제출 >
제출 완료

신고인

구분	☒ 개인 ☐ 법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한민국 +82
이메일		직장입력	☐
주소	우편번호검색		
상세주소			

① 신고증명서는 신고인 주소권에 가입된 주소로 발송되어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오류, 지연, 분실 등으로 발생되는 신고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책임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주검색 화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어에 아래와 같은 조합을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 [도르영+건물번호](#), [지역명+지번](#), [지역명+건물명\(아파트명\)](#), [사서함명+번호](#)

도르영 전체	영문보기	지도
13473 도르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409 지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21	영문보기	지도
13487 (463-400) 도르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79 (도르공사 판교영점소) 지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6	영문보기	지도
13487 (463-400) 도르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9 (화왕공원관리사무소) 지번	영문보기	지도

- 신고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 신고증서는 신고인 주소란에 기입된 주소로 발송되며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오류, 지연,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신고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책임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2 핵심만 쓱쓱 ABS 실무 매뉴얼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길이가 길 경우 용량 제한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I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II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요 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달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국가책임기관과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목적) 유전자검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유전자검 결과의 공개를 위한 정보 제공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공개 동의를
- (동의여부) 유전자검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공개 동의를

☐ 전체 동의 (모든 약관을 확인하고 전체에 동의합니다.)

구분	동의 여부	유전자검 제공자
성명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식별번호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연락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주소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유전자검영정	☐ 동의 ☐ 비동의	
수령 또는 봉도	☐ 동의 ☐ 비동의	
접근 목적	☐ 동의 ☐ 비동의	

2019년 11월 12일

○ 동의 ○ 비동의

1 신고인 서장

2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인을 작성해 주세요.)



Undo last stroke

Ok Cancel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
비동의시: 제출 서류 확인 후 추가 파일 첨부
-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전자 서명
- 3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 여부 체크
- 4 항목별 동의
- 5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전자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제출 서류 안내(비동의 체크시 제출서류 첨부 항목 활성화)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유전자원 제공자)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선택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유전자원 및 접근 이력

상호협력 조건

수수로 납부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유전자원 제공자

구분

☒ 개인
 ☐ 법인

성명

1

소속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한민국 +82

이메일

직접입력

☒

주소

우편번호

상세주소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다음

1 유전자원 제공자 정보
입력

•개인 및 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 접근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이 한 개 이상일 경우[자원추가]를 클릭하여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접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기관 선택 > 신고인 > 유전자원 제공자 >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상호합의 조건 >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제출 > 제출 완료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유전자원의 명칭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물자식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N표를 합니다. 접근 방법, 접근 목적, 접근 용도, 이용하려는 국가, 이용방법 내 용란은 필수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 접근 방법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외에 구매대행자 등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적습니다. 이때 제3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이용방법에는 해당 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의 개요를 간략히 적습니다.

유전자원의 명칭
(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학명 / 일반명 / 명칭

중국어 간체

수량 또는 농도

☐ 전물자식

접근방법

☐ 구매 ☐ 기증 또는 교환 ☐ 유전자은행 중재은행 등 ☐ 직접
☐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한 유전자원에 접근 ☐ 기타 { }

접근목적

☐ 상업적 ☐ 비상업적

용도

☐ 의약품 ☐ 화장품 등
☐ 원예용 ☐ 기타 { }

이용하려는 국가

국가를 선택하세요

이용기간

~

이용방법

2

자원추가

임시저장

다음

- 1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사항 입력
 - 2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를 할 경우 [자원추가]를 클릭하여 추가 입력
- [하위삭제]: 추가한 자원항목 삭제(최소 1개)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상호합의조건)

⚠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에 따라 입력 받는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기관 선택 > 신고인 > 유전자원 제공자 >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상호합의 조건 >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제출 > 제출 완료

상호합의조건

제결유무

☒ 합의 ☐ 미합의

상호합의조건 내용

☐ 공전적 이익공유
☐ 비공전적 이익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중재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임시저장

다음

상호합의조건

제결유무

☐ 합의 ☒ 미합의

미제결 사유

2

임시저장

다음

- 1 상호합의조건 체결 선택 시
- 2 상호합의조건 미체결 선택 시

- 상호합의조건 내용 해당사항 체크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

- 미체결 사유 기재

34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수수료 납부 정보 등록)

⚠ 접근신고 수수료는 1만원이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책임기관 선택 > 신고인 > 유전자원 제공자 >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상호합의 조건 >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제출 > 제출 완료

수수료 납부 정보 등록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 비회원 또는 회원(공인인증서아이핀)으로 납부
- 결제방식
 - 국민 신한은행 등 납부자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 바탕 신용카드 등 카드전자결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행정수표를 선택 구매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파일첨부

찾아보기...

3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다음

- 1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 2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가이드
- 3 수수료 납부 증빙을 위한 파일 첨부

- 수수료 납부사이트 이용을 위한 매뉴얼 다운로드 제공(PDF)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서 제출)

⚠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책임기관 선택 > 신고인 > 유전자원 제공자 >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상호합의 조건 >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제출 > 제출 완료

신고서 제출

상호합의조건 내용

☐ 공전적 이익공유
☐ 비공전적 이익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중재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임시저장

다음

수수료 납부 정보 등록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파일첨부

찾아보기...

3

신고서 제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11월19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2

3

신고서 제출

-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
- 2 신고서 제출을 위한 최종 전자서명
- 3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S 실무 매뉴얼 35



국내 유전자원을 외국(법)인에게 제공(수출)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유전자원의 소 관분야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고승인(PIC) 신고를 하고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책임기관: 환경부(야생생물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

따라서 외국(법)인에게 국내 유전자원을 제공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연구·개발의 목적이 있다면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른 사전통고승인(PIC)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해 이익공유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면 통합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서도 제출하면 됩니다.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신고증명서 검색)

⚠ 접근변경신고는 접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통합신고서비스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신고증명서 검색

접근신고증명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증명서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증명서 검색

총 개시물 : 2 / 현재페이지 : 1/1

번호	접수(발급)번호	신고인	접수(발급)기관	작성일	처리상태	조치	비고
2	KR-S1-19-D-1	홍길동	국립생물자원관	2019-10-02	증명서 발급	조치	변경신고
1		홍길동		2019-09-16	증명서 발급	조치	우편발송(제출처)

- 1 신고증명서 검색
- 2 자신에게 발급된 접근 신고증명서 발급 현황
- 3 접근변경 신고하기 [다음 페이지 이동]

- 접근변경 신고 전 신고증명서 원본을 해당 책임기관에 우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은 변경신고 서류 심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변경사항 적용 후 원본과 함께 재발송 됩니다. (우편발송 제출처 확인)
 - 해당 신고서의 접수(발급)기관을 통해 확인
- (우편발송 주소 확인)
 - 신고안내 > 변경신고 >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제출처 안내] 참조

▶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확인 신청서 작성)

⚠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의 신청인 항목은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신고인 정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고증명서 검색

확인 신청서 작성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신고인

구분	☒ 개인 ☐ 법인		
성명(대표자)	홍길동	소속(법인명)	Vrije Universiteit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94528413	전화번호	+82-0471824100

관련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번호

KR-S1-19-D-1

상호합의조건

상호합의조건 내용

☐ 금전적 이익 공유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상호합의조건 사본 1부

찾아보기

다음

- 1 상호합의조건 관련 사항 기재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업로드
- 2 [다음]클릭

▶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신청서 제출)

⚠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증명서 검색

확인 신청서 작성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상호합의조건

상호합의조건 내용

☐ 금전적 이익 공유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상호합의조건 사본 1부

찾아보기

신고서 제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11월12일

신고인 이상준

서인

신고서제출

-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
- 2 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 전자서명
- 3 신청서 제출하기

• 신청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실무 매뉴얼 37

3. 유전자원법 법령과 관련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유전자원법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유전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또는 ‘유전자원법’을 검색하면 ‘법률 제16016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 법령종류 | 열거하기 | 화면

생결합법 | ENGLISH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
만족도 조사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판례·해석례등 | 별표·서식 | 학칙·규정 | 법령기타 | 도움말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법령 검색 순위 | 내가 찾은 법령 정보

1 권속법

기관별	분야별	최신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현재결정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					
교육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국방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출산광역시						
법무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더보기

더보기

이벤트 시행법령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대통령령 11	-					
부령 2		부령 3	부령 2	-	-	-

알림판

국민청에 아카데미 모집 이벤트

적극발전 맞장

법제처에

新 메뉴를

추가해주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유전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6호, 2018. 12. 27.]

통합검색 | 법령종류 | 열거하기 | 화면

생결합법 | ENGLISH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
만족도 조사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판례·해석례등 | 별표·서식 | 학칙·규정 | 법령기타 | 도움말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법령 검색 순위 | 내가 찾은 법령 정보

1 권속법

기관별	분야별	최신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현재결정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					
교육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국방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출산광역시						
법무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더보기

더보기

이벤트 시행법령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대통령령 11	-					
부령 2		부령 3	부령 2	-	-	-

알림판

국민청에 아카데미 모집 이벤트

적극발전 맞장

법제처에

新 메뉴를

추가해주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전자원법 각 양식 원본은 ‘유전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1호)에 별지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령

유전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6호, 2018. 12. 27.]

통합검색 | 법령종류 | 열거하기 | 화면

생결합법 | ENGLISH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
만족도 조사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판례·해석례등 | 별표·서식 | 학칙·규정 | 법령기타 | 도움말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법령 검색 순위 | 내가 찾은 법령 정보

1 권속법

기관별	분야별	최신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현재결정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					
교육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국방부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출산광역시						
법무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더보기

더보기

이벤트 시행법령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대통령령 11	-					
부령 2		부령 3	부령 2	-	-	-

알림판

국민청에 아카데미 모집 이벤트

적극발전 맞장

법제처에

新 메뉴를

추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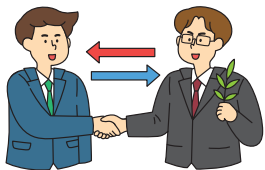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돌발 OX 퀴즈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려고 한다. 환자의 혈액은 인간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유전자원법 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설 병원체자원에 접근하므로 유전자원법의 적용을 받는다(유전자원법 제9조).

답: X



1.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위한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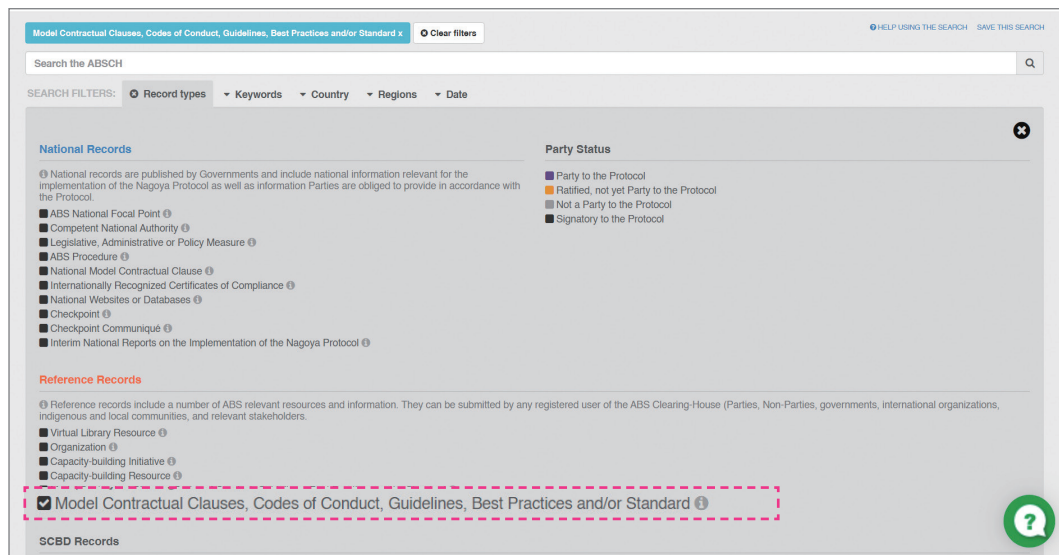
상호합의조건(MAT)은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제공자 즉,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 계약서 양식, 이익공유 비율, 제3자 이전조건, 특허 조건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국의 ABS 관련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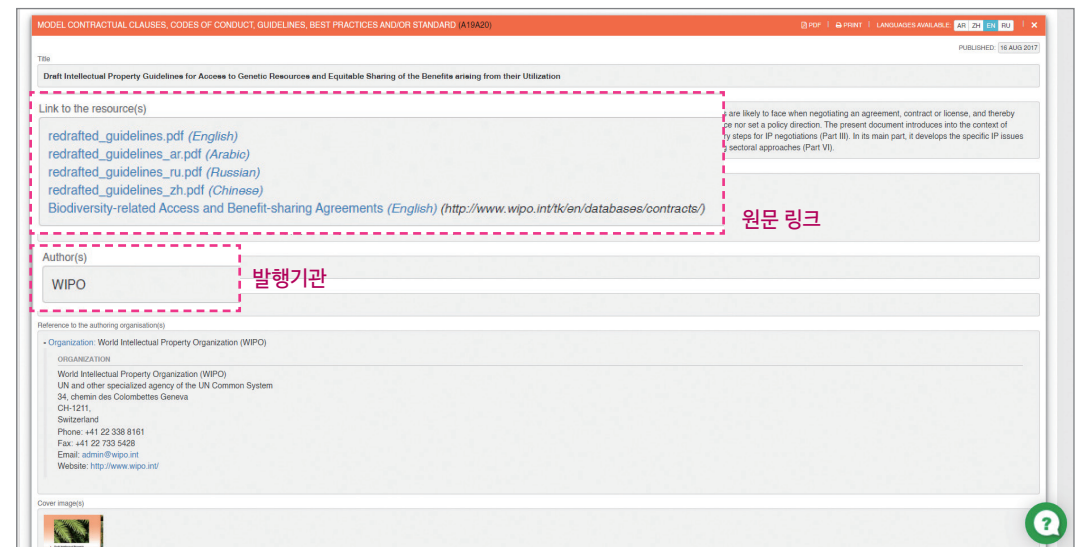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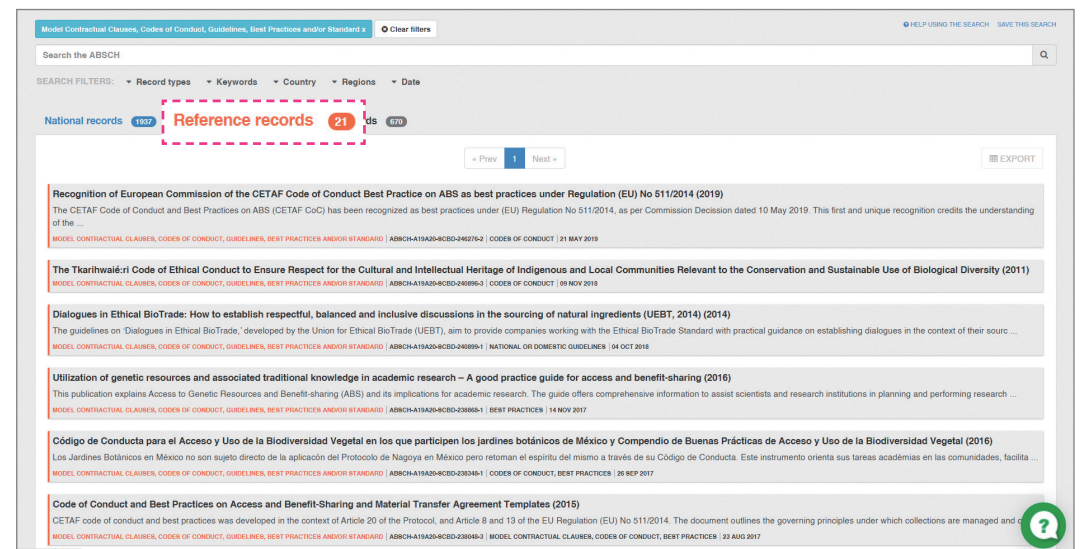
이익공유 비율 등 정해져 있는 상호합의조건(MAT) 계약 양식이 별도로 없다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리한 계약서 양식을 구성하여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부록에 우리나라 예시계약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국제기구 및 당사국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시계약서를 공개한 곳도 있습니다.

당사국 각 기관 및 국가에서 발행한 예시계약서는 ABSCH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Search]탭 → [Record types]필터 → Reference Records 하위메뉴의 Model Contractual Clauses, Codes of Conduct, Guidelines,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 체크박스 클릭



* [Reference records]탭 클릭 → 모델계약서/행동강령/가이드라인/모범관행 분류 확인 → 목록 클릭 후 요약 및 원본 확인 가능



2. 제공자에게 줄 이익공유의 방식이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공국에 따라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을 명문화한 국가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자와의 MAT 계약에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시 인도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익공유 지불방식으로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
-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0.1~0.5% 이내로 이익공유 (ABS지침 4조)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이익공유 비율
10,000,000루피 (약 168,800,000원)	0.1 %
10,000,001~30,000,000 루피 (약 168,800,000~506,400,000원)	0.2 %
30,000,000 루피 이상 (약 506,400,000원 이상)	0.5 %

* 법률에 지불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연간 총매출액	NBA/SBB에 지불할 수수료 (3년간 1회)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세금 제외한 금액	연간 이익공유 비율	BMC에 수수료 지급한 경우
10,000,000 루피	0	10,000,000 루피	500 루피	0
10,000,001~30,000,000 루피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0.2%	이익공유금액 25% 삭감
30,000,000 루피 이상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이상	0.5%	

- 지식재산권 신청과 관련된 이익공유를 지불한 경우, 이익공유 의무가 없음
-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은 이익공유 금액에서 25% 증가

특별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예시계약서 등을 참고⁴⁾하여 전략적으로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제공국의 이익공유 비율

국가	ABS 법	이익공유 비율	국가 이익공유 기금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2017)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	이용자가 발생한 이익의 0.5%~10%를 납부
인도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4)	(금전적 이익) 연간 총 출고액의 0.1%~0.5%	제공자는 이익공유 금액의 5%를 NBA에 납부(NBA: 2.5% SBB 행정비용: 2.5%), 95%는 BMCs 그리고 / 또는 이익요구자에게 분배
		(기술이전) 이전결과로 얻은 이익의 3%~5%	
		(지재권 보유자가 상업화시) 연간 총 출고가에서 분야별로 0.2%~1%	
		(지재권 제3자 양도 또는 라이선스) 연간 로열티 총액의 2%~5% + 수수료의 3%~5%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Law13.123/2015)	연간 순이익의 1%	이용자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0.5%(분야별 협정이 있는 경우 최소 0.05%)를 이익공유 기금(FNRB)에 납부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대한 법령(2017)	(금전적 이익) 총 연수익의 1% 이상	- 제공자가 정부관련 기관일 경우 이익의 30%를 보유하고 국가에 이익의 70% 납부
		(유전자원(파생품) 양도, 지재권 이용) 총 이전가치 또는 지재권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의 2% 이상	-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개인 또는 기관일 경우 이익의 50%는 제공자 보유, 50%는 국가에 납부
		(비금전적 이익)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다름	
남아공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칙(2015)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	신탁기금운영

3.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체결 상대자가 상호합의조건(MAT) 계약에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이익 공유 방식을 먼저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한 상태라면 상호합의조건(MAT)을 물질이전계약(MTA)으로 같음하도록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부각하는 이익공유를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위한 협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상호 신뢰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지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인도(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베트남(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7) 등

4) 본서 88페이지 참고

절차준수의 신고



1.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고 할 때 절차준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른 절차준수 의무는 '당사국으로부터 사전통고 승인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발생!

해외 유전자원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www.ab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점검기관 선택)

!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점검기관 선택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를 위한 점검기관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된 점검기관은 업무담당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준수 신고서는 제출 후 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길이가 길 경우 용량 제한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
비동의시: 제출 서류 확인 후 추가 파일 첨부
-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전자 서명
- 3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 여부 체크
- 4 항목별 동의
- 5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전자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제출 서류 안내(비동의 체크시 제출서류 첨부 항목 활성화)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유전자원 제공자)

⚠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접기관 선택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사전통고 승인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유전자원 제공자

구분

개인

법인

성명

소속

국가명

국가를 선택하세요

전화번호

대한민국 +82

이메일

직접입력

주소

우편번호검색

상세주소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다음

1 유전자원 제공자 정보 입력

•개인 및 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사전통고승인)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

접기관 선택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사전통고 승인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사전통고 승인 등록

발급국가

국가를 선택하세요

발급기관

승인번호

승인일자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다음

1 사전통고승인 관련 정보 입력
2 승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 접근하고자 하는 해외 유전자원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자원추가]를 클릭하여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내역을 기재

접기관 선택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사전통고 승인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유전자원의 명칭 (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학명

/ 일반명

/ 명칭

중복력 검색

수량 또는 농도

전통지식

접근목적

상업적

비상업적

접근용도

의약품

화장품용

원예용

기타

이익 공유 합의

제결유무

합의

미합의

상호합의조건 내용

균질적 이익공유

비균질적 이익공유

제2자 주류 이용에 관한 조건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매조정 중재 등

기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자원추가

임시저장

다음

1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사항 입력
2 이익 공유 협의 체결 유무 사항 입력
- 체결의 경우(상호합의 조건 체결서 사본 첨부)
- 미체결의 경우 사유 입력
3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일 경우 [자원추가]를 클릭하여 추가 입력
[하위삭제]: 추가한 자원항목 삭제(최소 1개)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서 제출)

⚠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접기관 선택

신고인

유전자원 제공자

사전통고 승인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신고서 제출

제출 완료

이익 공유 합의

제결유무

합의

미합의

상호합의조건 내용

균질적 이익공유

비균질적 이익공유

제2자 주류 이용에 관한 조건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이용자와 제공자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조건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매조정 중재 등

기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신고서 제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2019년11월19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Ok

Cancel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
2 신고서 제출을 위한 최종 전자서명
3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6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실무 매뉴얼 47

0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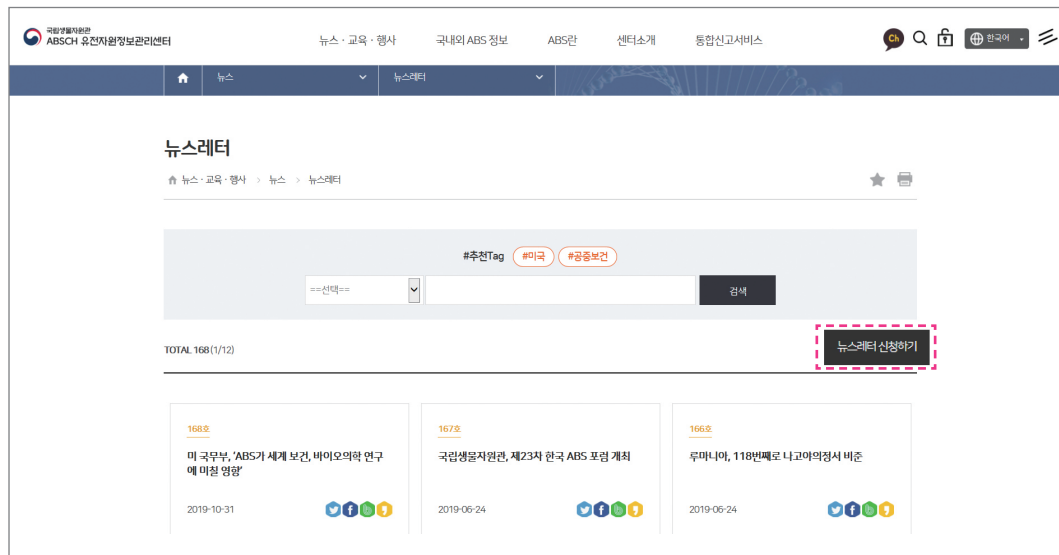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이행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s://www.abs.go.kr/kabsch/main.do>)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ABS 절차와 법령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국가책임/점검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은 헬프데스크(<https://www.abs.go.kr/irs/info/help.do>)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유전자원 소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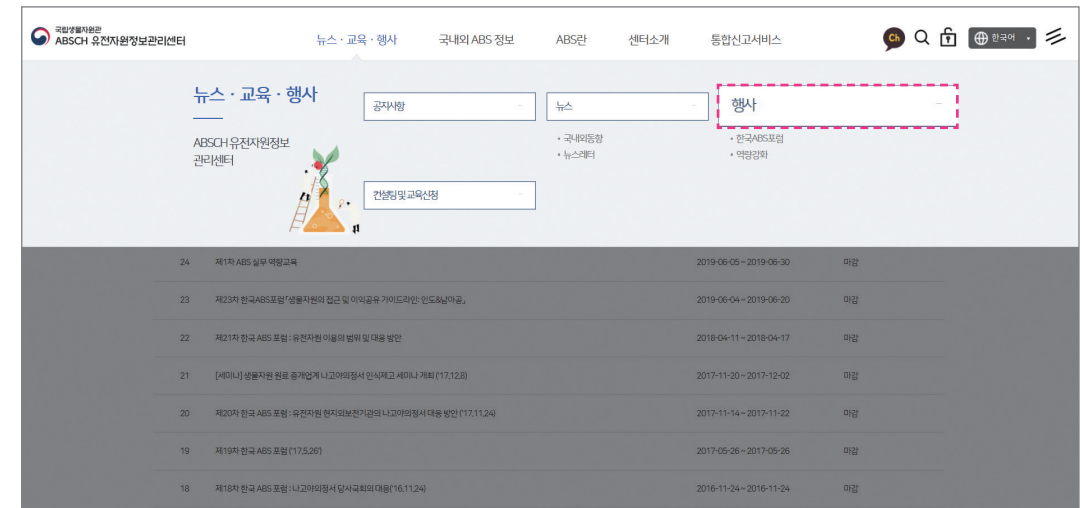
2. 나고야의정서 최신 해외 동향은 어떻게 아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해외 동향을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신청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 뉴스·교육·행사 → 뉴스 → 뉴스레터에서 지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 신청하기'를 통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교육이 있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BS 실무자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전 교육이나 온라인 사이트상에서의 실습 등을 통해 막연할 수 있는 ABS 이행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나고야의정서 관계자들을 위한 인식제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S 교육 및 세미나 일정 확인과 참가 등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 뉴스·교육·행사 → 행사 하위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출발 OX 퀴즈

유전자원법은 2017년 8월 17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국내유전자원에 접근시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유전자원법의 접근신고, 절차준수의 신고 등 일부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답: X



자주 묻는 질문

Q&A로 쉽게 풀어보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제조업체가 기술제휴를 통해 미생물 균주를 분양받아 발효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인가요?



해외에서 분양받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미생물의 발효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약품 등 특정 효능(기능)을 갖는 제품을 연구·한다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Q. 향신료를 인도 등지에서 수입 후 단순 배합하여 카레 같은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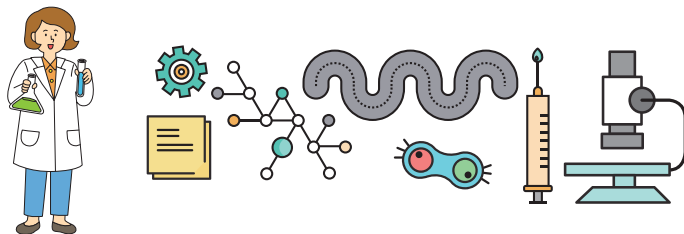


단순 식품용으로 제조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도의 생물다양성법 40조에 의하면 일반교역품목(Normally Traded Commodities, NTCs)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이 교역품(Commodity)으로 이용될 경우 생물다양성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강황(인도산)에서 커큐민을 추출, 연구를 통해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인가요?



NTCs에 포함되어 있는 강황(NTCs 목록 355번) 등 일부 향신료의 경우라도 인도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약품 등 특정 효능을 갖는 제품을 제조한다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Q. 직접적인 연구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선행 기술을 통해 카레 같은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해당하는지?



잘 알려진 선행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사가 이용하려는 선행기술이 인도의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등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전통지식: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차항)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도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규정, 관련 절차나 조치 등은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름(나고야의정서 제5조5항, 제7조, 제12조, 제16조)

Q. 유전자원을 수입해서 단순 배합, 단순 추출하는 경우도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



EU 가이드스(2016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고, 이후 특성이 알려진 생화학적 합성물을 단순히 첨가·가공(연구개발 없이)하는 행위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 EU 규칙 511/201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2016)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Q. 사전통고승인(PIC) 취득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전자원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용' 되었을 경우, 그 과정에 참여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자가 PIC 취득 및 MAT 체결의 주체가 됩니다.

Q. 제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나요?



이미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상품을 수입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ABS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분류학 및 계통학 연구 등은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나요?



유전자원법상 이용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태학적 연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5조 절차준수신고와 관련하여 자원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PIC 취득 건수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Q. 외국(법)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차준수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유전자원법 제14조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절차준수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Q. 해외 국가연락기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의 주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락기관과의 연락 기록 등 해외법령 절차준수를 위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Q. ABS 법령이 없는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절차준수신고를 해야하나요?



법 제15조에서는 절차준수신고 요건으로 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절차를 마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6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 K대학 연구실의 나효능 교수가 최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인도의 모링가(Moringa oleifera) 잎의 효능 연구를 위해 현지에서 표본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나효능 교수는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유전자원 원산국인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을 채집하는 경우에도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화장품 회사인 K社(사)는 보습에 좋다고 알려진 시어버터와 콜라겐을 첨가한 크림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어버터는 별도의 연구·개발 과정 없이 첨가만 하였으며 콜라겐은 자체 연구를 통해 피부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K社(사)는 각각의 원료에 대해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시어버터는 특성이 이미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없이 첨가만 하였으므로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EU 가이드선, 2016). 콜라겐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로써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전자원 원산국의 사전통고승인(PIC) 받아야 합니다.

Q. 한국의 K-기업은 A국가의 발효식품에서 기능성 미생물 균주를 분리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A국가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미생물자원도 나고야의정서상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생물을 연구, 개발하여 상업화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국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내 미생물자원센터들이 개발한 모범관행 매뉴얼에 의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현지내 물질을 수집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물질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ABS 관련 절차 준수 및 정보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K-기업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드링크제품으로 '힘나용'을 개발하였습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료로 충청남도 금산의 '인삼'을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K-기업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내국인이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원산지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한 경우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Q.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에서는 각국의 최신 동향 및 법률,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K-뷰티기업은 식품으로 수입된 감자를 이용하여, 기미·주근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팩을 개발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따라, 감자는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에 포함되므로, 이익공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이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의 작물이 “식량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ITPGRFA 제12조제3항(a)), 식량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을 제공한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익공유가 필요합니다.

Q. 한국의 K-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므로, 8월 17일 이후에 접근 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만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는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 법률에 따라 접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인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접근한 노니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후 제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 베트남의 ABS 관련 법: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7)

Q.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자원환경부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았습다.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언제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베트남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므로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절차준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전자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Q.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얼마 전 이탈리아의 올리브잎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문헌을 보고,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닌데, ‘힘나용’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어도 관련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통고승인 취득의 의무는 없습니다.

Q.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인도의 까마중(*Solanum nigrum*)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까마중은 NTC(Normally Traded Commodities) 목록에 포함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 중앙 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이라는 의미로 무역촉진을 위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목록화하여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물자원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상품(commod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생물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료로 이용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상의 ‘생물자원’으로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합니다.

Q.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유전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써,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CBD 제2조). 따라서 모든 생물자원이 포함되며, 별도의 적용대상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전자원 원산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법률 제정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 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등의 정보는 ABSCH 홈페이지(<https://absch.cbd.int>)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는 ①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 ②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③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등을 ABSCH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Q. ABSCH 홈페이지의 '비준국'과 '당사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비준국 :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비준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가입(Accession)은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당사국 : 비준서를 기탁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말합니다.

Q.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일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전자원의 원산국은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을 그 나라의 자연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국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복수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확보하려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제공국)의 법령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인도의 NTC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PIC)이 필요 없나요?



인도의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에 의하면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해 인도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는 무역촉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을 고시하여 동법의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NTC 목록에 포함되어도 원료나 제품개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법이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을 취득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미국 원산의 유전자원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경우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미국은 비당사국이므로 유전자원법 상 내국인의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친 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전자원법 제15조)

Q.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역량 조항에 최빈개도국,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경제 전환기 국가,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정의와 리스트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나고야의정서 제22조는 최빈개도국 등에서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 및 사무국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며, 각 기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UN 사무국에서 매년 '세계경제상황과 전망(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부속서에서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당사국 등 관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2016 보고서

Q. 식물유래가 아닌,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원료에도 이 협약이 적용되나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자원이며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유전자)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학물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원 유래 합성생물학도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자원 부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Q. 생물해적행위만으로 특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출원된 특허의 경우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나고야의정서 상의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Q. 화장품 개발 시 특정 생물자원(식물의 추출물 등)이 매우 소량(0.01%~ 수준)사용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나요?



유전자원을 소량 이용하였더라도 원산지국의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의 특정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 특허를 취득할 예정인 원료, 원산지국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L.)처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에 접근하여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에 사전통고승인(PIC)을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식물은 과거 국내로 유입되어 전국의 야생에서 자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당식물의 원 산국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할 때는 접근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Q.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마우스로 효능을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변형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나요?



유전자변형마우스를 개발하는 행위는 연구·개발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에 포함되지만, 신약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진단과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Q. 유전자원을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벌칙 등의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국가	주요 내용
에콰도르	에콰도르 곤충표본 밀반출 혐의로 일본 규슈대학 정원사 재판(19.4) - 2019년 3월 규슈대학 정원사 히로카즈씨는 휴가 중 에콰도르에서 무척추동물(거미, 나비, 딱정벌레 등 고유종 포함) 표본 371개체를 밀반출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재판전까지 출국이 금지됨 - 히로카즈씨는 재판에서 Dedalma 나비재생분양센터에서 발급한 이전허가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를 몰수당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콰도르인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사죄함 - 하지만 검사는 전문가와 협업한 의도적 채집이 추정되며,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성 물질을 함유한 딱정벌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함 - 1심에서 징역2년 구형, \$3,940벌금 및 공공사과문 발표를 명하였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 히로카즈씨는 19년 5월 21일 에콰도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일본에 돌아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한달에 한번 일본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함
호주	일본인 남성 2인, 도마뱀 밀반출 시도 중 검거(19.6) - 일본인 남성 2인은 호주 퍼스 공항에서 살아있는 솔방울 도마뱀(암시장에서 \$7,000에 거래되는 종) 13마리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밀반출 시도하다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 중 - 이는 징역 10년과 약 210,000 호주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국가	주요 내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시즈오카 시(市) 직원, 남아공 식물채취 혐의로 체포(19.5) - 시즈오카 시(市) 직원은 휴가 중 남아공 길가에 자생하는 식물 유포르비아(<i>Euphorbia</i>) 등 2종 53개체를 채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 이 직원은 야생 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상용으로 채집하였다고 진술함 -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벌금 2만랜트(약16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됨 - 이후 시즈오카 시(市)는 직원에게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간 1/10감봉 조치함
인도	인도 시킴 주(州), 무허가 식물종자 채집 의심 외국인 신원 경보(16.1) - 인도 시킴 주(州) 관광부는 관광업계에 생물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방문에 대해 경계할 것을 통보함 - 이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시킴 주(州) 식물종자를 판매하는 영국인 T.D. Atkinson과 인도의 고유종을 채집하여 유전연구를 하는 미국인 Jhon Mood로 알려짐 - 이러한 무허가 종자채집행위는 최고 5년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
브라질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조사 착수(18.6) - 2017년 브라질 환경청 산하 환경연구·재생자원 연구소(IBAMA)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이 정부의 허가 없이 브라질 유전물질 아시아베리를 기술·개발용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75,000헤알(약2,183만원)의 벌금을 과금함 - 이에 대해 삼바존은 자사 제품은 아시아 과육에 여러 물질을 단순 첨가한 것이라고 항변함 - 2018년 브라질 아마파 주(州) 연방 검찰청은 삼바존이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CGEN)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최종상품을 제조하여 이익을 창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 이라고 밝힘



부록

실무역량을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



부록

01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중국	2016. 6. 8. (2016. 9. 6.)	중국 생태환경부		(이행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기타) 헌법, 전리법 및 전리법 시행세칙, 종자법, 축목법, 환경보호법, 중의약법 등	-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어 접근 절차를 규정 - 접근목적의 변경 및 제3자에게 양도, 조례 발효 전 유전자원의 접근 목적 변경 시 재심사 절차 필요 - 이익공유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기금을 0.5~10% 지불해야 함
일본	2017. 5. 22. (2017 8. 20.)	환경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이행법)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2017) (기타)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 생물다양성 지역협력 촉진법,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침	- 이용국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일본 내의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사전동의는 불필요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공유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유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베트남	2014. 4. 23. (2014 10. 12.)	천연자원 환경부	천연자원환경 부, 농업농촌 발전부	(이행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기타)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제약법, 과학기술부령, 환경보호법 및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자원환경데이터의 수집·관리·사용에 관한 정부의정서	- 유전자원 접근 시 접근등록서류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허가/거절여부를 통보 - 이용과 제공자 간에 별지 서식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국가책임기관에서 최종 허가시 발생,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등록승인서를 근거로 코민급 인민위원회의 보증 - 이용자는 등록승인서 발급 후 12개월 내에 접근 허가 신청서류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하며, 국가책임기관은 5일 이내에 신청유효여부를 통보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결정
인도	2011. 5. 11. (2012. 10. 9.)	환경부	국가생물다양 성총국	-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타) 생물다양성법 (2002), 생물다양성 규칙(2004),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보호법(2001),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법(1992), 유해미생물, 유기체 또는 세포의 제조, 사용, 수입, 수출 및 저장에 관한 규칙(1987), 향신료법(1986), 환경(보호)법(1986), 농업 및 가공식품 수출개발 권한법(1986),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1981), 산림보전법(1980), 인도해역법(1980), 수자원관리법(1977) 등	- 연구를 위한 접근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을 구분하여 규정 -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이익공유,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접근된 유전자원 판매액에 대한 이익공유, 연구결과의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익공유,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제3자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지식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 이익공유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영국	2016. 2. 22. (2016. 5. 22.)	환경식품 농촌부	기업에너지산 업전략부, 규제단속국	• (이행법) 2015년 3월 나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 • (기타)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 영국 국내법에서 PIC과 MAT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 영국 국민이 제공국의 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적절주의의무 신고서 및 감독관 협조, 정보제공 의무 • 국가책임기관은 이용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및 신고 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에 대하여 관련조치(준수통보, 주의통보, 벌금, 형사처벌 등)를 취할 수 있음
프랑스	2016. 8. 31. (2016. 11. 29.)	환경에너지 해양부	고등교육연구 혁신부, 생태및연대전 확국, 주택자 연계획부, 수자원및생물 다양성부, 생물다양성 영향프레임 워크국	• (이행법) 2015년 3월 나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 • (기타)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 비상업적 연구 목적,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증가, 현지외 보존의 증진 등의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접근신고 • 접근신고대상이 아닌 전자원의 이용에 대해 국가책임기관의 허가 필요
독일	2016. 4. 21. (2016. 7. 20.)	자연보전및 경관관리부	연방자연 보전청	• (이행법)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의 접근 및 이익공유 연방법 • (기타)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 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으며, 사전통고 승인에 관하여 소극적인 규제태도를 취하고 있음 • ABS 의무 위반시 연방자연보전청(BfN)에 의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 •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내용을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단지 계약의 존재유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벨기에	2016. 8. 9. (2016. 11. 7.)	환경관리총국	자연산림청, 농업천연자원 환경총국	• (기타)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 특정 접근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지역별 접근절차 상이
멕시코	2012. 5. 16. (2014. 10. 12.)	환경자연 자원부	환경자연자원 부, 국립종자 검사인증원, 농수축산농촌 개발식품부, 산림토지집행 위원회주민 발전국가위원 회, 자연보호 지역위원회	• (이행법)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자원의 접근 신청 절차 • (기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위한ENBioMex 계획, 야생생물일반법,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법, 지속 가능한 산림개발에 관한 일반법, 생태저울 및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등	• 접근신청자는 환경자연 자원부에 접근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성명·명칭 등 정보와 함께 관계당국, 접근하고자 하는 식물자원의 보존 유형, 권한당국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접근신청을 위한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공식 신분증명,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 개요, 예상결과 및 작업 일정 등이 기재되어야 함
남아공	2013. 1. 10. (2014. 10. 12)	환경부	환경부	• (이행법) 생물자원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칙, 남아공의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체계 : 공급자, 사용자 및 담당기관에 대한 지침	• 토착생물자원 및 기타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한 생물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 필요 • 생물탐사 또는 기타 연구 목적의 토착생물자원 수출시 허가증 필요

주요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⁵⁾ 서식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⑧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접근 방법란, ⑭ 접근 목적란, ⑮ 접근 용도란, ⑯ 이용하려는 국가란, ⑰ 이용방법란,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복수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6. ⑱ 접근 방법란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외에 구매대행자 등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적습니다. 이때 제3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7. ⑲ 이용방법란에는 해당 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의 개요를 간략히 적습니다.
8. ⑳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익 공유의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를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표시하며,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

graph LR
    A[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서류 심사]
    C --> D[수리 여부 심사]
    D --> E[결정]
    E --> F[신고증명서 발급]

```

5) 관련서식은 각국의 법령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원문은 법령 참조.

2. 스페인

1)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5. 전자우편:
6.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7.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아래 정보 추가 기입
 - 가) 상호:
 -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 다) 주소:

PART 2. 비영리 연구의 정보.

1. 간단한 서술 (목적, 이유 및 의도):
2. 연구의 예상 프로그램: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PART 3.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의 서술: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장 외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회사 또는 연구소의 법적 대표 또는 연구원 신고서.

본 문서를 통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접근을 신청하는 유전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12월 13일자 법 42/2007 제71.6조에 따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한다;
3.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4.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을 발급하는 관할 당국에 연구의 최종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장소, 일시, 서명:

2)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호 조건을 확립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
7. 본 허가증은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 동의와 상호 조건 확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급되며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은 다음과 같다(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비영리 연구목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으로 표기할 것.
11. 제3자 양도 조건: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허가증과 이용자의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5.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6.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한다:
 - 가) 상호:
 -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 다) 주소:

PART 2. 사용 정보.

1. 사용의 간단한 서술 (목적, 이유 및 의도):
2. 사용의 예상 프로그램: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PART 3.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 :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지 외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 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사전 동의 및 상호 조건 확립 (첨부할 것)

상기 정보 중 기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하고 증명하시오.

장소, 일시, 서명: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호 조건을 확립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의 정보:
7. 본 허가증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 동의와 상호 조건 확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급되며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은 다음과 같다(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11. 상업적 목적.
12. 상호 조건의 이행.
 - 가)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으로 표기할 것.
 - 나)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상업적 활동이 파생될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보고한다 (특허 신청, 제품 등록 및 판매 등)
 - 다)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또는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동안, 이익의 연간 정산을 위해 획득한 순이익에 대하여 보고한다.
13. 제3자 양도 조건: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할 경우, 본 허가증 및 확립된 상호 조건과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3. 말레이시아

1) 비상업적 목적 신청 시 허가 신청서

법정신고서

비상업적 목적 허가를 위한 신청서

_____ [신청인 성명] (NRIC번호/여권번호)은/는 _____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언합니다.

1. _____ [생물자원,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용의 목적을 적으시오] 와/과 관련하여,

본인은

- (a) 제안 조치와 관련된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b)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책임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 (c) 수집한 생물자원의 분류학적 사본을 책임기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 (d) 생물자원을 책임기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해당 기관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 (e) 본 법의 17(1)항에 따라 이익공유에 관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유전자원, 파생물, 생물자원을 구성하거나 생물자원에 함유된 것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 혹은 타인이 연구 혹은 개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법정신고서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본 법의 55조에 의거하여 유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선언이 진실임을 믿으며 1960년 법정신고법(Statutory Declarations Act 1960)의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상기인이 서명하고 서약함

신청인 서명

_____ 에서
_____ 주에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 앞에서,

.....
(법원판사, 치안판사, 혹은 선서 임회관)

4. 베트남

1)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제2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수신인 : (국가책임기관)

1. 신청인

- 기관 :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2. 신청 내용

- 유전자원 (일반명, 기타명, 학명)
- 접근 대상 유전자원의 예상 수량/용량 (유전자원 표본 수, 수량/용량)
- 유전자원 접근 목적
 - ☐ 비상업적 연구
 - ☐ 상업적 연구
 - ☐ 상품 개발
- 예상 접근 기간 : _____ 부터 _____ 까지 (최장 3년)
- 접근 예정지 :
- 예상 제공자 : ☐ 제공자에 대한 정보 (해당할 경우 작성) :
☐ 제공자 추천 소개 요청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 베트남 영토 밖으로 유전자원 반출
 - ☐ 접근 의도에 대한 변경 없이 제3자 이전

3. 예상 접근 방법 :

-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간) :
- 접근 방법 (수단, 도구, 장비) :
- 접근 예정지 (야생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컬렉션) :
-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을 수행하는 국내 기관 및 내국인 (상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4.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이용 (해당할 경우 작성)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예상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5. 첨부 문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 2017/ND-CP호(2017.5.)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서류 및 해당 시 기타 서류)

6. 신청자 서약

(개인/기관명)은 본 서식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 입니다.

상기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신청자” _____ 가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_____

신청자 대리인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3호 서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 _____ 호/ 제공자-접근자)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하여,
- 민법 (2015)에 의거하여,
- 생물다양성법 (2008)에 의거하여,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2017/ND-CP호(2017. .)에 의거하여,
- 양 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날짜) _____ (장소) _____ 에서 본 계약서가 다음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

유전자원 제공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제공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및

유전자원 접근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접근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동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유전자원을 제공 또는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협상하며, 공동으로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제공자와 접근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다.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방법, 수량/용량, 유전자원의 부피: 표본 수, 수량/용량, 개체
3. 유전자원 접근목적: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품 개발 중 해당하는 목적에 대해 명시
4.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 부터 _____ 까지 (최장 3년간))
5. 접근장소
6.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접근 예정지

7.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예상 용도 (해당할 경우)
8. 유전자원 국외 반출 계획 (해당할 경우)
9. 기타 합의사항
(첨부 유전자원 접근계획 참조)

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자 및 제공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2017/ND-CP호(2017. .)의 서식 및 이익공유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협상할 것이다.

제3조. 접근자의 의무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득 후 유전자원 접근 계획에 한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한하여 접근한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접근 목적에 한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한다.
 - 상품 개발의 경우 접근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원에 기반한 제품의 이용 및 상업화로 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 및 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의도의 변경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2017/ND-CP호(2017. .)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전자원의 접근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접근자는 제공자의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또는 원산지를 보장해야 한다.
 - 접근된 유전자원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추진할 경우 접근자는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이익공유를 보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2017/ND-CP호(2017. .) 제22조 제2항에 정의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 /2017/ND-CP호(2017. .)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이익공유 :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를 이행한다.
7. 공지 및 보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본 칙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체계 운영
8. 규정에 따라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에 수수료, 요금 및 세금 납부
9.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제4조. 제공자의 의무

1. 요청 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 절차 중 접근자와 조율
2.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
3.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제5조. 분쟁해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와 관련된 본 계약서와 유관한 모든 분쟁은 베트남법 조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된 조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회계

접근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보관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의무를 지닌다. 접근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진행된 거래
- 2. 영수증 및 청구서에 대한 별도 보고서
- 3. 회계 자료는 확인을 위해 사용 및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4. 유전자원/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는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 5. 접근자는 표본과 관련된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본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_____ 년간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고, 본 계약 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를 저장해야 한다.
- 6. 기타 합의사항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 특정 사례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세금, 수수료
- 법에 따른 비밀유지약정서
- 보험
- 파일 및 자료에 대한 접근
- 본 계약의 개정 및 보완
- 본 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불가항력
- 기타 관련사항

본 계약서의 원본은 _____ 부(각 _____ 페이지) 작성되었다. 각 당사자는 _____ 부를 보관하며, 국가책임당국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접근자) _____ 및 (제공자) _____ 간 (접근장소 또는 제공자의 등록주소지) _____ 에서 체결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원본 1부는 코민급 인민위원회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장소),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코민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계획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문서)

1. 유전자원에 대한 일반 정보

- 접근대상 유전자원 :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표본 수, 수량/용량, 무게, 개체 _____
- 유전자원 접근목적
- 기간: (예상 접근 기간: _____ 부터 _____ 까지 (최장 3년간))
- 접근 예정지 :
 - 야생 서식지에서의 접근 :
 - + 위치: 대지, 산림 하위지구 및 기타 생태계에 대한 지리적 좌표
 - + 경계: 도표 및 최소 축척 1:10,000의 지도를 첨부한 자연적 경계에 대한 설명
 - + 접근 예정지의 넓이
 - + 접근대상 지역의 생태계 및 동식물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의 접근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 접근 예정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유전자원 수집 기간 및 장소)

2. 접근 방법

- 접근 방법 및 이행 방법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수단, 도구, 기구; 수집 기간/세션)
- 수집과정에 참여한 내국인 및 국내기관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3. 유전자원이 보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사회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장소에서 수행된 영향평가
- 이와 같은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4. 유전자원 이용계획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 목적 및 예상 결과
- 유전자원의 특성, 가치, 이익을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사항 (해당 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제공자와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다를 경우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해 명시)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기관 및 내국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상세히 기재)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유전자원 반출 (수량/부피, 베트남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 횟수에 대한 상세 정보)
 - + 의도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전 (유전자원을 수령할 기관 및 개인,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예정일, 예상 용도에 대한 정보 첨부)

5.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서약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체결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상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및 이행)

3)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제8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수신: 책임국가기관

1. 국내 과학기술기관, 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정보:

- 과학기술기관 : 기관명; 과학기술 활동 등록을 위한 기관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2. 유전자원 국외 반출 목적

- ☐ 비상업적 연구
- ☐ 연구

3. 국외 반출예정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연번	항목	정보
1.	유전자원명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장소	(주소, 유전자원이 수집된 장소의 좌표)
3.	기간	
4.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및 수집대상 부분)
5.	수집 수량/용량	
6.	수집방법	(수단, 장비, 도구)
7.	유전자원 관련 통지식 (해당할 경우)	
8.	국외 반출 신청대상 유전자원 수량/부피	

4. 제공자에 대한 정보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기관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5. 유전자원의 국외 이용에 대한 정보

연구를 위해 협업 추진 및 유전자원을 수령할 국외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6. 본 신청서에 동봉된 서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 제20조에 명시된 필요 서류 및 해당될 경우 기타 서류)

7. 서약

- (과학기술기관명/학생명/박사과정학생명)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
-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에 한하여 반출예정인 유전자원을 사용한다.
-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_____./2017/ND-CP호(2017.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 앞에서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진다.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상기 명시된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신청자” _____ 의 요청을 고려 및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_____.

신청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5. 인도

1) 생물다양성규칙 양식 1

양식 I

(규칙 제14조 참조)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파트 A

- (i) 신청인의 서면 정보
 - (ii) 성명:
 - (iii) 영구 주소:
 - (iv) 인도 내 연락 가능한 개인/중개인의 주소(있을 경우):
 - (v) 기관 프로필(신청인이 개인일 경우는 개인 프로필), 관련된 증명 서류 부착 필요:
 - (vi) 사업의 성격:
 - (vii) 기관의 총 매출액(US\$):
2. 접근할 생물자원과 그 성격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정보
- a) 이용될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일반명(학명):
 - b) 해당 생물자원의 지리적 위치:
 - c)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성격(구술/문서):
 - d)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확인된 모든 개인/지역사회:
 - e) 수집할 생물자원의 수량/용량 (기간 명시):
 - f) 명시한 생물자원 수집 기간:
 - g) 자원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성명과 명수:
 - h) 연구의 종류와 규모, 상업적 용도 및 예상되는 이익을 포함한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목적:
 - i) 자원 수집에 따른 접근으로 생물다양성 어느 요소라도 위협 또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여부:
3.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
4. 접근된 자원의 최초 목적지 및 연구·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5.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얻은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통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경제적 및 그 외 이익.
6.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생명공학적, 과학적, 사회적 및 그 외 이익.
7.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통하여 인도/지역사회가 얻게 될 이익의 평가치.
8. 이익공유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과 계획.
9. 그 외 관련된 사항.

파트 B

선언

나는/우리는 선언합니다: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생태계에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이름
직함
장소
날짜

2) 가이드라인 부속서의 양식 A

양식 A
(규칙 제2조 참조)

신청자에 의하여 사용될 생물자원에 대한 공급되는 정보

자진 신고

사용되는 해당 생물자원의 일반명 : _____
학명 : _____
거래된 식물, 동물, 또는 부속물 : _____
접근의 구체적 목적 : _____

접근 장소/원산지*	수량/용량 (단위: Kg)	요금 (단위: 개당)	생물다양성감독원 (State Biodiversity Board, SBB)	예상 구매자/이용자 (예상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파악된 지방단체/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서

1. 나는 ABS 가이드라인을 읽고 해당 조건들을 이해하였으며 생물자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들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해당 목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NBA/SBB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나는 NBA/SBB의 필요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NBA/SBB와 공유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또한 나는 이 서식에 제공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부정확한/잘못된 정보 및 고의적인 은닉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거래자/회사/제조사/위임 대표자의 성명
거래자/회사/제조자의 전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장소
날짜

3)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2

양식 II
(규칙 제17조 참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외국인, 외국 회사, 인도비거주자(Non Resident Indians, NRIs)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생물다양성기구(NBA)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i) 성명
ii) 주소
iii) 직업 프로필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실행한 연구결과의 세부 사항
3.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연구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연구결과가 제공되기로 예정된 개인/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8.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인/기관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9.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10. 연구결과 제공의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과 정보 수령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MOU에 관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4)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3

양식 III
(규칙 제18조 참조)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국립생물다양성기구(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 i) 성명
 - ii) 주소
 - iii) 직업 프로필
 -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IPR 취득을 원하는 발명에 대한 세부 사항.
3.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발명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지역 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발명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5)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4

양식 IV
(규칙 제19조 참조)

접근된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을 위한 국립생물다양성기구(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 i) 성명
 - ii) 주소
 - iii) 직업 프로필
 -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세부 사항.
3. 체결된 접근 계약의 세부 사항 (사본 부착 필요).
4. 이익과 이미 시행된 이익공유 방법/합의에 관한 세부 사항.
5. 접근된 자원/지식의 이전을 받는 제3자에 대한 서면정보.
6. 제3자 이전의 목적.
7.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8. 신청인과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
9.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으로 인도/지역 사회에 오는 이익의 예상치.
10. 제3자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방법 및 합의 사항.
11. 그 외 관련된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2010년에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해 행정적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 등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대륙별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유전자원법의 체계를 이해하여 보다 적합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동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를 토대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가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 산업계가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시 반드시 써야 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시 참고하는 예시계약서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조항을 선택·수정·보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본 예시계약서는 계약시 참고하는 예시계약서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조항을 선택, 수정, 보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당사자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1) 유전자원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2) 유전자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2.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관계

[선택조항 2.1.]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을 갈음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선택조항 2.2.]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과 별개로 체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물질이전계약(MTA)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제공자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2. 이용자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제3자

제3자는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이들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institution)을 의미한다.

4. 접근대상

[선택조항 4.1]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인 경우

4.1.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예: 가시오갈피나무/가시오가피)
- 나. 유전자원의 추출 부위 (예: 나뭇가지)
- 다.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예: 에탄올추출)
- 라. 유전자원의 형태 (예: 분말)
- 마. 유전자원의 수량 (예: 100 kg)
- 바. 유전자원의 소재지 (예: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옹호길 113-24)
- 사. 기타 유전자원 관련 사항

[선택조항 4.2]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 관련된 전통지식인 경우

4.2.1.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예: 가시오갈피나무/가시오가피)
- 나. 유전자원의 추출 부위 (예: 나뭇가지)
- 다.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예: 에탄올추출)
- 라. 유전자원의 형태 (예: 분말)
- 마. 유전자원의 수량 (예: 100 kg)
- 바. 유전자원의 소재지 (예: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옹호길 113-24)
- 사. 기타 유전자원 관련 사항

4.2.2. 위 조항에 따른 각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접근신고(PIC)

5.1. 이용자는 접근신고(PIC)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1] -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접근신고를 한 경우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접근 신고증명서 사본을 본 계약에 첨부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2] -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접근신고를 할 경우

- ① 이용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전자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접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2. 이용자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전자원등의 사용목적

[선택조항 6.1.] - 비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학술연구 및 수집, 훈련, 강의 및 교육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이 비상업적 연구에서 상업적 목적의 연구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2.] - 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3.] - 상업화

6.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3.2. 제공자는 상업적 목적의 활용 및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파생된 제품의 상업화를 승인한다.

7. 지식재산권

[선택조항 7.1.]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7.1.1.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취득한다.

7.1.2. 이용자의 유전자원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7.1.3. 제공자와 이용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7.2]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2.1. 제공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7.2.2. 이용자의 유전자원 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공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2.3.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 : 유상 [] 무상 []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지역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선택조항 7.3.] - 지식재산권을 이용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7.3.2. 이용자의 유전자원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선택조항 7.3.3.1.] - 지식재산권의 무상 실시

7.3.3.1.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무상인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식재산권을 []에서 실시할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선택조항 7.3.3.2.] - 지식재산권의 유상 실시

7.3.3.2.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상인 경우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지역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8. 유전자원등의 제3자 이전

[선택조항 8.1.] - 제3자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제공이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 여부를 묻물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전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유전자원을 구성하는 표본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선택조항 8.2.] -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등의 이용과 이전에 관한 동일한 의무를 포함한 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8.3.] - 비상업적 연구에서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학술연구 및 수집과 훈련, 강의 및 교육 또는 기타 비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등의 이전은 이용자가 제3자(또는 기관)에게 본 계약에 따른 조항에 관하여 통보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 경우에 허용된다.

9. 유전자원등의 보존 및 기탁

[선택조항 9.1.] - 유전자원등의 정보 표시

유전자원등의 이용 또는 보존에 관하여 특정 조건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제한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9.2.] - 유전자원등의 제한 없는 기탁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있다.

[선택조항 9.3.] - 유전자원등 기탁의 제한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없다.

10.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 - 금전적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1.] - 지급 방식

[선택조항 10.1.1.1.] - 정액 지급

10.1.1.1. 이용자는 매년 []를 차기 회계연도 1분기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2.] - 경상 지급

10.1.1.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연매출액의 []%를 차기 회계연도 [1분기]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1.1.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의 []%를 차기 회계연도 [1분기]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3.] -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10.1.1.3.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원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단계 : []

- [] 단계 : []

- [] 단계 : []

10.1.2. 당사자는 상기 이익공유 금액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방법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의 지급에 필요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10.2.] - 비금전적 이익공유

10.2. 이용자는 다음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래 예시조항에서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재)

- (i). 지속가능한 사용 관행 교육을 포함한 제도적 능력배양 제공, 사회 기반시설 마련, 유전자원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개발 수행;
- (ii).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기술이전 또는 연구개발결과 공유;
- (iii). 제공자 및/또는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기술 능력 강화 및 기술 이전;
- (iv). 제공자의 유전자원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교육과 훈련에 기여/협력;
- (V). 생산 위치, 유전자원등이 접근된 지역에서 유전자원등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장비나 기술 제공;
- (vi). 생물학적 인벤토리(biological inventories)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관련 과학적 정보의 공유;
- (vii). 유전자원등에 중점을 둔 식량, 보건 및 생활 안보를 포함한 제공자의 우선적인 수요 관련된 연구 수행;
- (viii). 유전자원등의 전달과 후속 이익에 기여하는 제공자 기관/개인에 대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제공;
- (ix).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 등 지급.

11. 비밀유지

- 11.1.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상대방은 서면 동의 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11.2.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3.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출판/공표 내용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기간과 종료

[선택조항 12.1.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선택조항 12.1.2.] 계약의 자동갱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그의 연장계약의 만료일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12.2.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다.

12.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지의 효력 발생 이후 30일 이후에도 의무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2.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해지 후 []년간 유효하다.

13. 계약 종료 후 유전자원의 처리

13.1.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는 유전자원 및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 및 유형물 등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잔여 유전자원은 폐기(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3.2. 유전자원이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된 경우, 본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유전자원은 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14.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용자에 의해 유전자원이 훼손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분쟁해결

[선택조항 15.1.] - 재판에 의한 해결

15.1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민국 []에 위치한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선택조항 15.2.] - 중재에 의한 해결

15.2.1. 당사자가 []개월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당사자 간에 상호 동의한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15.2.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1 또는 3

중재지 : [대한민국 / 서울(도시 / 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 : [한국어(언어)]

15.3. 중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6.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실질법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된다.

17. 보고

17.1.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매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고를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 관련 연구결과 발표

18.1. 제공자 및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유전자원등의 이용 및 연구성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출판할 권리가 []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18.2.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 사실을 사전에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18.3.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구성과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에 대한 동의 시, 이용자에게 공표 결과물(간행물 포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제공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의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제공자”	“이용자”
당사자명	[]	[]
주 소	[]	[]
대표자명	[]	[]
서 명		

04

유용한 사이트



법령정보, 최신동향 등

검색

- 1)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s://www.abs.go.kr>)
 -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법 소개
 - 당사국의 ABS 관련 법령 등 최신정보, ABS 안내서와 가이드북, ABS 뉴스레터 정보제공
 -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법령정보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 2) 통합신고서비스(<https://www.abs.go.kr>)
 -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변경신고,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준수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
- 3) ABS 뉴스레터(<https://www.abs.go.kr/kabsch/program/newsletter/list.do?cid=98>)
 - 각 국의 비준, 법령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대응 동향정보 제공
- 4) CBD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https://absch.cbd.int>)
 -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접근을 제공(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법령, 유전자원데이터베이스 등)
 - 나고야의정서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
 -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 수행

원산국, 종 검색

검색

- 5)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https://www.kbr.go.kr>)
 -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지정관리종, 생물자원 통계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무 이행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6) 한반도의 생물다양성(<https://species.nibr.go.kr>)
 - 국가생물종목록, 멸종위기야생생물, 한국의 고유종 등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종 검색
- 7) 생물표본 대여 및 생물소재 분양서비스(<https://species.nibr.go.kr>)
 -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표본을 대여하거나, 생물재료/소재 등을 분양
- 8) Catalogue of Life(<https://www.catalogueoflife.org>)
 - 전세계의 3,000명 이상의 분류전문가가 참여하고, 약200개 이상의 전문분류기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 전세계의 생물종에 대한 분포정보 등을 제공

▶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

인도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국가책임기관	국가생물다양성총국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관련 웹사이트	ABS 전자파일링(PIC 신청)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ABS 관련법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중국

국가연락기관	생태환경부
국가책임기관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관련 웹사이트	www.mee.gov.cn
ABS 관련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2017)

브라질

국가연락기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가책임기관	유전유산관리위원회 Genetic Heritage Governing Council
관련 웹사이트	유전유산관리위원회 https://sisgen.gov.br/paginas/login.aspx
ABS 관련법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Brazilian Biodiversity Law

프랑스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연구부(EU적절주의 의무선언 관련)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관련 웹사이트	환경부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ABS 관련법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레콘키스타에 관한 2016년 8월8일 제2016-1087호 법률 LAW N °2016-1087 of 8 August 2016 for the recovery of biodiversity, nature and landscapes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연락기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국가책임기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관련 웹사이트	https://www.environment.gov.za
ABS 관련법	생물다양성법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스위스

국가연락기관	연방환경청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국가책임기관	연방환경청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관련 웹사이트	https://www.bafu.admin.ch/bafu/en/home/topics/biotechnology/info-specialists/nagoya-protocol.html
ABS 관련법	Ordinanc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Nagoya Ordinance, NagO) 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NCHA)

베트남

국가연락기관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농업농촌발전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관련 웹사이트	http://antoansinhhoc.vn/en/
ABS 관련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No.59/2017/ND-CP)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말레이시아

국가연락기관	천연자원환경부 생물다양성산림관리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지역별 14개 국가책임기관 지정
관련 웹사이트	www.doe.gov.my
ABS 관련법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안)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Bill 2017(draft)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기획·편집 송승이, 엄지원, 오현경, 이종석, 이제훈, 안세창
디자인·제작 두현

©국립생물자원관2019

ISBN 978-89-6811-392-5 94360
978-89-6811-304-8(세트)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543-0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비매품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